

연구보고서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李章揆 · 李麟求 · 呂智娜 · 趙顯竣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李章揆 · 李麟求 · 呂智娜 · 趙顯垸



서 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지역주의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 17개에 불과하던 지역무역협정은 2006년 9월 말 현재 21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흐름에 비교적 뒤처져 있던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은 30개가 넘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채택한 이래 연평균 9.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세계 4위로 올라섰으며 독일·미국과 함께 세계 3대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한국의 해외 생산기지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투자 규모 역시 급속히 증가해왔습니다. 실제로 2005년 양국간 무역총액은 1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2대 수입대상국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2005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대중(對中) 투자 실행액이 26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4대 투자유치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처럼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심화를 거듭함에 따라 중국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2005년부터 한·중 FTA의 타당성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양국간의 FTA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FTA 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반면, FTA

체결에 따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추진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려 합니다.

본 연구가 도출하고 있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FTA 추진전략은 국가(지역)별로는 인접지역과 개도국 우선이고, 동기에서는 에너지자원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해외시장 진출, 국내 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요인은 차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국이 '쨰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과 FTA 전략을 연계해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중국이 FTA를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기대하는 동기는 에너지자원 확보, 시장확대, 대(對)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국·일본과의 주도권 경쟁 측면에서 한·중 FTA의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며 경제적 필요성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주요 협상내용을 통해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현실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세부사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를 살펴보고 양국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을 협상분야(관세철폐·원산지규정·투자보장)와 산업(농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중

FTA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FTA 체결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반면,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FTA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효과 분석과 더불어 상대국의 FTA 추진전략 및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큰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FTA 전략에 대한 정성적·계량적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체결한 FTA 협상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본원 이장규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이인구 부연구위원, 여지나 연구원 그리고 건국대학교 조현준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진의 구성은 중국경제, 중국외교, 한·중 FTA, 한·중 관계, 계량모형에 관하여 오랫동안 공동연구해온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서, 본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유기적인 협조하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보고서의 집필과정에서도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국민대학교 은중학 교수, 외교통상부 동북아통상과 전성식 서기관, 외교안보연구원 최원기 교수, 산업연구원 김석진 부연구위원, 본원의 김박수 선임연구위원, 지만수 연구위원, 박윌라 연구위원, 양평섭 부연구위원 그리고 익명의 평가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중국의 FTA 전략을 이해하고, 한·중 FTA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2월
원장 李景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외교·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전략은 국가(지역)별로는 인접지역과 개도국 우선이고, 동기에서는 에너지자원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해외시장 진출, 국내 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한편, 역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4장의 계량분석 결과와도 부합하는바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FTA 추진대상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 근접성과

석유 및 광물자원 매장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Probit 모형 결과에 대한 한계효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FTA 결정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FTA의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협상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철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15년 정도의 관세삭감 유예기간을 정하며, 관세삭감 일반 규율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민감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인정한다. 둘째,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 기준(value-added criterion)을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에 비해 선호한다. 셋째, 투자보장, 지식재산권, 환경표준,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보다는 상품무역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FTA를 선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FTA 추진전략 및 주요 협상내용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및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기대하는 동기는 에너지자원 확보, 시장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국, 일본과의 주도권 경쟁 측면에서 한·중 FTA의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경제적 필요성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중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FTA라는 틀 없이도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과 엄청난 잠재적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이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 경제는 통합이나 다름없는 상호의존도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데에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FTA 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과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과의 FTA가 경제적 후생의 증대 및 무역확대를 가져오는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 대상국은 대부분 중국에 비해 제조업이 낙후된 국가이므로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이 중국과의 FTA 관세철폐 협상시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FTA로 인해 혜택 또는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충분히 수행하여 한·중 FTA 관세철폐 및 민감품목 설정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며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글로벌 표준 상용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 무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해볼 때 한·중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저한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중 FTA 추진시 중국의 수입관세는 물론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 FTA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더

욱 적극적임을 감안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괄적 FTA’를 체결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차 례

서언	5
국문요약	9
약어(略語) 표기	19
제1장 서론	21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29
1. 협상완료국	34
가. 중·ASEAN FTA	34
나. 중·칠레 FTA	36
다. 중·파키스탄 FTA	37
2. 협상진행국	39
가. 중·호주 FTA	39
나. 중·뉴질랜드 FTA	41
다. 중·GCC FTA	42
3. 중·홍콩 CEPA	43
4. 주요 논의대상국	44
가. 상하이협력기구(SCO)	44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45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47
1. 외교·안보적 측면	49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49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55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58
2. 경제적 측면	60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60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65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67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71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72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73
가. 분석방법 개요	73
나. 분석모형	75
3. 실증분석 결과	79
가. 추정 결과	79
나. 한계효과 추정	82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83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산업별 주요 쟁점	87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88
가. 관세철폐	90
나. 원산지규정	97
다. 투자보장	100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102

가. 농업	102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106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09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110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114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114
나. 산업별 예상 쟁점	116
3. 한국의 대응전략	118
참고문헌	125
Executive Summary	131



표 차례

표 2-1. 중국의 FTA 진행 현황	31
표 3-1. ASEAN 주요 국가에서 화교의 인구비율 및 자본력	64
표 4-1. 분석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	76
표 4-2. 분석모형의 추정 결과	80
표 4-3. 분석모형의 한계효과	82
표 4-4.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자원 현황	85
표 5-1. WTO 협정과 중국의 주요 FTA간의 규율대상 비교	88
표 5-2. 중·ASEAN 조기자유화조치 관세인하표	92
표 5-3. ASEAN 6개국과 중국의 일반분야 상품 관세인하표	93
표 5-4. 베트남의 일반분야 상품 관세인하표	93
표 5-5.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일반분야 상품 관세인하표	94
표 5-6. 중·ASEAN FTA의 민감(초민감)품목 현황	95
표 5-7. 칠레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인하 계획표	96
표 5-8. 중국의 칠레산 수입품 관세인하 계획표	96
표 5-9. 호주의 주요 대중 수출품 관세율	103
표 5-10. 뉴질랜드의 대중 무역 상위 10대 품목	105



그림 차례

그림 2-1. 중국의 주요 FTA 추진국과의 협상 추진 추이	33
그림 6-1.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113
그림 6-2. 한국(중국) FDI 유출(유입)에서의 중국(한국)의 비중	113



글상자 차례

글상자 6-1. 중국의 FTA 로드맵	111
----------------------------	-----



약어(略語) 표기

ACFTA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RF	Asean Regional Forum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TC	Change in Tariff Criterion
DDA	Doha Development Agenda
EAFTA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EHP	Early Harvest Program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FTA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MES	Market Economy Status
MFN	Most Favored Nations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ROO	Rules of Origin
RVC	Value-added Criterion
SACU	South African Custom Union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PS	Sanitary and Phytosantiary
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TRQ	Tariff rate Quotas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제1장 서론



지역주의는 2000년대 들어 더욱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며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980년 17개에 불과하던 지역무역협정(RTA)은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211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국가에 의해 체결된 RTA만 해도 36개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화에 동참하려는 개별 국가의 노력과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외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의의 불모지였던 동북아시아에서도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은 30개가 넘는 역내외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채택한 이래 연평균 9.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1980년 3,034억 달러에서 2005년 2조 2,261억 달러로 증가하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올라섰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1980년 154달러에서 2005년에는 1,700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의 수출과 수입 규모는 1982년 각각 223억 달러, 19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각각 7,623억 달러, 6,60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수출입 규모는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대외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세계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6.7%에 달하였다. 또한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입도 크게 증가하여 1979~2005년 FDI 누계액이 약 6,400억 달러에 달하였는바,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수준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생산제조 거점 및 시장으로서 중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함에 따라 외국의 자본과 생산시설·인력이 빠르게 중국으로 유입되

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의 경제·기술자원은 궁극적으로 투자효율이 높은 곳으로 재배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비용 생산기지와 잠재적인 거대시장으로서 이점을 지닌 중국은 ‘블랙홀’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의 자원을 유치하는 데 엄청난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무역 흑자의 증가에 힘입어 중국의 외환보유액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1월 말 기준으로 1조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 중국의 상품수입이 세계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에 달하였다. 2006년 4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방미 중에 행한 연설에서 금후 5년간 중국의 상품수입 총액이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방대한 시장규모를 보여주는 일례로 2005년에 중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592만 대로 일본의 580만 대를 초과해 세계 2위로 상승했으며 2010년에는 1천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¹⁾

국제통상질서에서 중국의 위상과 관련하여 Hale(2003)은 중국이 국제분업체제나 국제공급사슬에서 ‘이중 허브(dual hub)’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상품에서는 중국이 세계를 위한 제조거점(manufacturing hub)이 되고 있고, 고부가가치의 자본집약형 상품(부품 포함)에서는 세계가 중국을 위한 제조거점이 되어 결과적으로 중국이 구매거점(purchasing hub)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업구조로 인해 중국의 수출 증가는 공산품의 수입 증가와 해외직접투자 기회의 확대를 유발하게 되어 중국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역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러한 ‘이중 허브’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국제분업구조의 새로운 변

1) 다만 『中國時報』(2006년 1월 30일자) 등 참고

화를 촉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제분업체계에서 결코 피동적이지 않으며, 자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분업체계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이 소위 ‘썬우취취(走出去: 해외진출)’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면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와 다국적 경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배경에는 중국 중심의 국제분업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통상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 부주임 于培偉(2005)는 무역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이미 구비했으며, 중국이 지닌 세계적인 생산기지 와 소비시장은 중국이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으뜸패(trump)’이고, 주요 무역국이 중국과의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수혜자인 중국은 지역경제통합과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상호 결합하는 방향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지역경제통합을 주도할 조건과 책임을 갖고 있다는 시각은 중국이 타국과의 FTA를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국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을 형성해나가려는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FTA 정책은 국제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및 ASEAN 국가 등이 각기 역내의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 차원, 수준, 범위의 FTA를 동시다발적이고도 상당히 복잡하게 추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에는 ‘중국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요인’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중국경제의 세계적 부상 에 대한 인접국·지역의 반응으로 역내 FTA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Roland-Holst(2003)는 중국의 경제대국화와

WTO 체제에 대한 지지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동아시아국가가 종래의 지역주의를 재평가하고 기존의 지역블록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 경제가 WTO에 가입하는 등 개방과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수출경쟁력과 수출규모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동아시아국가는 종래의 지역주의의 효과나 기조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기존 지역블록의 구조와 범위, 통합수준 등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최근 중국이 인접국·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해 역내 FTA 구조의 변화가 촉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蔡宏明(2003)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중국은 동아시아의 기러기형(flying geese) 경제발전 패턴에서 후미에 위치했고 세계경제와의 교류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피동적인 지역경제협력 전략을 전개했으나 아시아 금융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후,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지역경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고 한국 역시 해외생산기지가 필요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투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해왔다. 실제로 2005년 양국간 무역규모는 1천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두 번째 수입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수출시장인 동시에 두 번째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더불어 2005년 실행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투자규모가 26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투자유치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와 같이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심화를 거듭함에 따라 중국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05년부터 한·중 FTA의 타당성에 대한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면서 양국간 FTA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FTA 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FTA 체결에 따른 과급효과, 특히 농수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 또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한·중 FTA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는 FTA 체결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반면,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남영숙 외(2004), Lee, H. S. *et al.*(2005) 등은 CGE 모형과 무역지수 분석을 통해 중국과의 FTA 체결이 한국의 거시경제, 농업, 제조업, 대중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대상국 선정에 대한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FTA가 국가간 경제 및 정치 관계의 원천(source)이라기보다는 반응(response)을 나타내는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임을 감안한다면 FTA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더불어 상대국의 FTA 추진전략과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큰 의의를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FTA 전략에 대한 정성적, 계량적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하고 이와 더불어 그 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도록 한다. 즉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FTA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그 추진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집중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을 외교·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FTA 추진에 대한 결정요인과 추진대상국 선정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FTA에 대한 접근방식 및 추진대상국에 대한 예측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상결과 그리고 협상진행국과의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규범(norm)에 대한 중국의 FTA 협상범위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전략 및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제2장

중국의 FTA 추진 현황



1. 협상완료국
2. 협상진행국
3. 중·홍콩 CEPA
4. 주요 논의대상국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화가 경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중국은 초기에는 FTA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화를 ‘중국의 부상’을 위해 적극 이용함으로써 점차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주도세력으로 발전하려는 계획을 추구하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WTO 가입 이후 개방 확대요구로 인해 FTA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FTA에 대한 관심은 첫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로 무역비용이 낮아짐으로써 시장접근성이 향상되며, 둘째 중국기업들이 새로운 원자재와 설비를 더 낮은 비용으로 획득함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이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WTO를 통한 협상보다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하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은 각기 자국 중심의 구도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역내국가들과의 FTA 추진에서도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²⁾ 따라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FTA를 통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합의 구도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FTA 전략은 경제권역과의 FTA 협정과 양자 FTA 협정으로 구성된 분명한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는 ASEAN+3(한국, 중국, 일본)을 기본 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인도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도 FTA를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현재 다수의 국가·지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2) 조현준(2004), p. 14.

일반적으로 FTA의 추진단계는 양 당사국간 FTA의 추진의사를 확인하게 되면 우선 FTA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FTA feasibility study)를 진행하고(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을 전개하여 FTA 협정 최종 합의에 도달한 후(2단계), 마지막으로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협상 단계별로 중국의 FTA 추진국 현황을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이 중에서 중국의 FTA 협상 주요국은 FTA를 이미 체결한 ASEAN 10개국과 칠레, 파키스탄을 비롯하여, 경무관계긴밀화협정(CEPA)을 체결한 홍콩, 마카오, 현재 FTA 공식협상을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그리고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한국,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직 공동연구 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과도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³⁾ 이 중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방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표 2-1. 중국의 FTA 진행 현황

협상단계	해당 국가
1단계	한국, 일본,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2단계	호주, 뉴질랜드, 걸프협력회의(GCC: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3단계	홍콩, 마카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
기타*	상하이협력기구(SCO: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주: 1단계 - FTA 타당성 공동연구

2단계 - 협상 전개 및 FTA 협정 최종합의에 도달

3단계 -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되는 단계

* 공동연구는 하지 않았으나 FTA 추진에 합의한 국가임.

3) SCO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함으로써 중국과의 FTA 협상을 먼저 시작하였고 유럽국가로는 아이슬란드, 아프리카국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중국의 MES를 인정함으로써 중국과의 FTA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였다.⁴⁾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27개 국가·지역을 포함하는 9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2005년 중국의 이 국가·지역들과의 무역액은 대외무역 총액의 25%에 해당하는 약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한편 중국이 FTA 추진에 소요하는 시간은 협상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 참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FTA 추진과정은 양국이 FTA 추진의사를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협상의 준비단계로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개시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공동연구 기간은 길게는 1년 5개월(중·호주)에서 짧게는 4개월(중·뉴질랜드)이 소요되었는데 공동연구에 소요되는 시간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FTA 추진 합의 이후 양국간 진전의 강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⁶⁾ 중국이 OECD 국가 중 최초로 FTA 추진에 합의한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에 대한 뉴질랜드의 MES 인정 이후 양국이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공동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호주는 뉴질랜드보다 먼저 FTA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하였으나 MES 인정을 주저한 결과 이에 앞서 MES를 인정한 뉴질랜드보다 중국과의 FTA

4) 뉴질랜드는 2004년 4월에, 호주는 2005년 4월에 각각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였다.

5) 新京报(2006. 9. 18), 中智自贸协定下月实施 我5891种产品出口智利零关税

6) 중·ASEAN FTA의 경우 1년, 중·칠레 FTA는 7개월, 그리고 중·파키스탄 FTA의 타당성 공동연구에는 6개월이 소요되었다.

협상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이것이 중·호주 FTA의 공동연구 기간을 연장시킨 주요한 원인이며, 이는 공동연구 기간이 FTA 내부적 고려사항의 복잡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양국간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격적인 협상라운드들의 시작에서 협상 체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협상라운드 횟수는 공동연구 기간보다 국별 차이가 더욱 크다. 중·ASEAN FTA의 경우 2001년 11월 개시된 협상라운드가 2004년 11월 FTA 합의에 이르기까지 3년간 17차에 걸쳐 진행된 반면, 칠레와의 경우는 1년간 네 차례 협상을 끝으로 FTA가 타결될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단일국가가 아닌 ASEAN과의 FTA가 가지는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현저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는 칠레에 앞서 FTA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FTA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FTA 추진과정에서 소요시간과 협상 횟수는 협상 상대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 중국의 주요 FTA 추진국과의 협상 추진 추이

대상국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ASEAN	공동연구 개시	FTA 협상개시		FTA 최종합의	FTA 발효	
칠레			공동연구 개시	FTA 협상개시	FTA 최종합의	FTA 발효
파키스탄				공동연구 개시	FTA 협상개시	FTA 최종합의
호주	FTA 협상 진행순서 • 공동연구 진행 • 연구결과 바탕으로 협상 진행 • FTA 협정 최종 합의 •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		공동연구 개시		FTA 협상개시	FTA 7차협상
뉴질랜드			공동연구 개시	FTA 협상개시		FTA 9차협상

협상의 양자적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중국의 협상태도에서만 비롯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중국이 협상국가에 따라 그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칠레와 같은 중소국가로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반면, 협상 체결의 함의가 비교적 중요하고 리스크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례로 중·칠레 FTA를 신속하게 진행했던 것과 유사하게 중·파키스탄 FTA의 경우에도 공동연구에 단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동연구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조기자유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매우 신속하게 추진한바 있다.

1. 협상완료국

가. 중·ASEAN FTA

중국과 ASEAN 10개국은 2000년 11월 FTA 타당성 연구를 개시한 이래 2001년 11월 FTA 계획을 초안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 11월 FTA 합의에 이르기까지 17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4년 11월 29~30일 제10차 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은 중국과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완료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2005년에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2010년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예정이다. 중국과 ASEAN은 제1단계로서 2004년 중 농산물 관세를 낮추고 2006년에는 완전 폐지하였으며 조기자유화조치(Early Harvest Program)에 따라 농산품 573개 품목 중 63개는 무관세, 69개는 5~10%, 435개는 11~36%, 6개 품목은 특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르면 현재

8.1%인 중국과 ASEAN의 평균 관세율을 2007년에 6.6%, 2009년에는 2.4%로 인하시키고 2010년 1월 1일부로 90%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양측은 정보통신, 인적자원 개발, 상호 투자 및 메콩강 개발, 교통, 에너지, 문화, 여행 및 공공위생 등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부문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ASEAN의 양자 무역액은 1991년 8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약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 무역액은 약 2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에 중국과 ASEAN은 인구 18억 명, 무역규모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인구, GDP, 교역 등의 방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개도국간 FTA를 이루게 된다. 이 지역의 총무역액이 2010년에 NAFTA를 초과하고 2020년에는 GDP 총량이 EU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ASEAN FTA는 NAFTA,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ASEAN과 상품무역에 관한 FTA 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함으로써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진출(走出去) 대상지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구도 속에서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다방위·다형식(多方位·多型式)의 지역일체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ASEAN+1 구도는 중국의 서남 방향으로의 지역일체화 전략의 일환임을 의미한다.⁷⁾ 이와 같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7) 郭继丰(2005년 9월 13일자), 「中国FTA战略: 合作共赢全球均衡」, 『第一财经日报』, 중국은 서북 방향으로 중앙아시아, 동북 방향으로는 러시아와 몽골, 동쪽 방향으로는 북한, 한국, 일본 등과 지역일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각국의 경제발전수준과 경제구조, 자원 분포 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중·칠레 FTA

중·칠레 FTA 상품무역 협정은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회담기간 중 체결하였으며 칠레 의회의 국내비준을 거쳐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중·칠레 FTA 협상은 2002년 칠레가 중국에 먼저 제안한 후, FTA 타당성 연구를 거쳐 2004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의 칠레 방문 때 공식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 양국은 2005년 5차에 걸친 공식협상 끝에 11월 18일 FTA 상품협상에 최종 합의하였다. 중·칠레 FTA는 중국이 ASEAN과의 FTA 체결 이후 단일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 협정인 동시에 남미국가와 맺은 첫 번째 FTA 협정이다.

중·칠레 FTA 협정이 2006년 10월 1일부로 정식 실시됨에 따라 칠레는 중국산 5,891종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였고 중국은 칠레산 2,806종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2007년에 중국은 1,947종의 칠레산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양측이 관세를 삭감한 주요 품목은 농산물, 화공제품, 방직의류, 전기설비제품 등이며 전체 관세품목의 97%에 대해 5년 또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FTA의 정식 실시 이후에 양국은 서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을 시작하여 여행, 운송, 건축, 전신, 공정설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상을 전개하여 시장진입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양국간 무역과 투자 발전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칠레 FTA는 비록 상품무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은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입품의 37%(이 중에는 대칠레 수입총액의 92%를 차지하는 구리가 포함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며, 칠레는 75%의 중국산 수입품(총액 50% 수준)에 대하여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어 양국간 무역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칠레의 무역액은 2000년 이래 연평균 22%씩 증가하여 2005년에 7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칠레는 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국의 3대 무역대상국으로, 중국은 칠레의 2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주로 섬유, 신발, 장난감, 하이테크 제품을 칠레에 수출하고 있으며 구리, 종이펄프, 철강 제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이 협정 발효를 계기로 현재 40억 달러인 대중 수출 규모가 2008년에는 8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중·칠레 FTA를 통하여 자원(특히 광물과 임산자원)의 공급처로서 주목하고 있는 남미와의 교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4년에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쿠바 등을 방문하여 석유·철광석·목재 및 기타 에너지를 확보하는 등 에너지 외교의 성과를 거두었고, 일부 국가로부터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받기도 하는 등 중남미국가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양자간 FTA의 파트너로서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유로 칠레와의 FTA 추진을 급속하게 진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응하여 자원 공급처로서 남미를 주목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FTA가 남미에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레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와 남미간 무역경로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남미의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을 꾀하고 있는 칠레는 중국기업들의 남미 투자 및 경영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이 협정을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중·파키스탄 FTA

2006년 11월 24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페르베즈 무사라프(Pervez

Musharraf) 파키스탄 대통령의 공동합의하에 중국과 파키스탄은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파키스탄은 중국이 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양국간의 FTA 논의는 2004년 12월 파키스탄 총리의 방중시에 양국 FTA 공동연구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중·파키스탄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TA)을 체결한 데서 시작되었고 같은해 12월에 파키스탄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 특혜무역협정은 중국이 외국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양자 특혜무역협정으로서 중국이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⁸⁾

양국은 2005년 4월 중·파키스탄 FTA 틀 속에서 조기자유화조치를 체결한 후, 2005년 8월 무관세 적용품목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중·파키스탄 FTA는 앞서 체결한 특혜무역협정이 조기자유화조치의 부분을 이루게 됨으로써 특혜무역협정의 내용을 FTA 협상의 틀 안으로 흡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 후 양국은 시장진입, 원산지규정, 기술적 무역장벽(TBT),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무역구제, 투자, 분쟁해결, 협력 등의 의제와 관련해 여섯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2006년 11월 24일 협상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중·파키스탄 FTA에 따라 양국은 두 단계에 걸쳐 전체 화물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로 양측은 협정 효력 발생 후 5년 동안 각자의 세목 중 85%에 달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인하를 실시하며, 이 중 36%의 제품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중국의 관세인하품목은 주로 축산물, 수산물, 채소, 광산제품, 섬유제품 등이며, 파키스탄은 소고기, 양고기, 화공제품, 기계, 전자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2단계로 양측은 협정 효력 발생 이후 6년째부터 1단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각자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하하게 된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가까운 장래에 세수등록 및 무역량에서 각자의 무관세제품 비율을

8) 賓建成·陳柳欽(2005), 「世界双边FTA的发展趋势与我国的对策探讨」, 『经济研究』, No. 11. (Nov.)

각각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⁹⁾ 중·파키스탄 FTA는 화물상품 무역자유화 외에도 투자 촉진과 보호, 투자대우, 징수, 손해보상 및 투자분쟁해결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어 양측의 투자를 계속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TBT, SPS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2006년 1월에 시작된 조기자유화조치로 양국간 수출입 평균관세는 27%로 낮아진 상태이다. 현재 파키스탄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70%가 면사(직물), 피혁제품과 해산물이며 중국은 주로 기계설비, 화공, 전자 및 신발류를 수출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쌀, 과일 및 부가가치가 높은 방직품 등을 수출하고자 하며, 조기자유화조치의 실시로 이미 망고와 감귤 등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 2005년 양자 무역액은 42억 6천만 달러로 2004년대비 39% 증가하였고, 2006년 1~3월 까지 양국 무역액은 10억 1,8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3% 증가하였다.

양국은 매우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파키스탄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주요 무기 공급처이기도 하다. 파키스탄 역시 중국의 핵심 관심사인 대만, 티벳 인권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⁰⁾

2. 협상진행국

가. 중·호주 FTA

중·호주 FTA는 2005년 4월 18일 호주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함으로써

9) 新華網(2006. 11. 27), 「中国和巴基斯坦签署自由贸易协定」.

10) Reuter(2006. 11. 24), “China signs free trade pact with Pakistan”.

써 선진국 중 뉴질랜드에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간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까지 총 일곱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제8차 협상은 2007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투자영역의 제한조치를 철폐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7차 협상에서 양국간 협상 진행에 난항을 초래한 이슈는 중국의 농업개방문제, 서비스와 투자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 FTA 체결, 협정문 작성시 원산지규정과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입장차이의 문제 등이다. 한편 서비스 영역에서 양국은 서비스시장 진입 협상을 위해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이다. 호주는 법률, 금융(은행업, 보험 및 주식·펀드 매니지먼트 포함), 교육, 건설, 엔지니어링,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 등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호주 정부는 2007년 3월의 8차 협상에서 통신, 교통 및 물류, 회계, 여행, 광산업 및 환경서비스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과 호주의 무역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양국간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284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호주는 중국의 9대 무역대상국, 중국은 호주의 2대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주로 자원확보 차원에서 호주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에서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호주는 중국에 있어 철광석,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의 주요 수입원이다. 또한 2002년 중국은 호주로부터 25년에 걸쳐 약 190억 달러 상당의 LNG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4년 중국의 대호주 농산물 수출은 2억 4,400만 달러인데 반하여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24억 달러에 달해 호주의 농업계는 FTA 체결시 중국 농산물시장 접근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7억 4천만 명의 중국 농민에 대해 시장 개방 문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사회불안으로도 확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호주는 자국의 수출농산품이 중국의 전체 농산품 생산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으며 경작 가능한 토지와 수자원의 문제로 호주의 식량생산능력 확대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개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4월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은 2년 이내 중·호주 FTA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한 바 있으나, 중국의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자국 농민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우려 및 호주의 공산품 관세삭감으로 인한 국내 제조업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협상 진전에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 중·뉴질랜드 FTA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4년 5월 무역경제협력기본협정(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을 체결하고 양국간 FTA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4년 10월 공식적으로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4년 12월 1차 협상에서 양국은 자유무역 상품의 범주와 관세삭감 모델에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05년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2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 관련 관세삭감과 투자 촉진 등의 이슈를 다루었다. 이후 2006년 10월에 개최한 9차 협상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양국 전문가들은 원산지규정과 시장 진입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2007년 1월 베이징에서 10차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며 2007년 4월부터 1년 이내에 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 중에서는 최초로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2005년 양국간의 상품무역액은 약 50억 달러 규모인데 조만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뉴질랜드의 3대 무역대상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중·GCC FTA

중국과 GCC는 2004년 7월 경제, 무역, 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 (Framework Agreement on Economic, Trade, Invest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양측은 상품부문에 대한 협상을 추진한 후 서비스, 투자 및 기타 부문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완전 자유화까지 FTA 체결 이후 10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FTA를 체결할 경우 이는 중국이 ASEAN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연합체와 체결하는 FTA가 된다. GCC와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은 정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TA 협상의 주된 주제는 관세율 인하, 수출입 절차 간소화, 양 지역간 투자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3차 FTA 협상에서는 세관 검사과정,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무역구제 및 상품무역 관련 법률문제, 자유무역협정 원문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GCC는 중국산 의류, 직물, 전기통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며 중국은 GCC의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및 기타 화학제품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있는 상태이다. 2005년 중국의 GCC에 대한 수출액은 전년대비 32% 증가한 138억 달러, 수입액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20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2005년 말 현재 중국이 GCC 지역에서 체결한 건설수주 및 노무계약의 누계액은 각각 66억 달러와 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GCC의 중국 투자액은 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였

다. 중국과 GCC는 2010년 양자간 무역규모가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2위의 원유소비국인 중국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GCC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다. 중국의 석유수입은 2004년에 200만b/d에서 연간 약 40만b/d씩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1천만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대(對)중동 석유수입량이 2004년 90만b/d에서 2025년에는 700만b/d로 증가하여 중동의존도는 현재의 45%에서 7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¹¹⁾

3. 중·홍콩 CEPA

경무관계긴밀화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CEPA)은 중국이 홍콩 및 마카오와 체결한 경제협력 협정이다. CEPA는 FTA와 유사하지만 그 범위가 FTA보다 넓다. 중·홍콩 CEPA는 2001년 11월 홍콩특별행정장관 도널드 창이 중국 중앙정부에 제출한 ‘유사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의해 기초가 마련되어 2002년 초 중앙정부의 지시하에 1년 6개월에 걸친 협상이 시작되었다. CEPA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2003년 6월 29일과 2005년 1월 1일에 체결되어 1,108종의 홍콩제품이 무관세로 중국 내륙에 수출되는 길이 열렸다. 그 내용은 주로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홍콩제품의 무관세 내륙 진입, 서비스업 개방 및 양 지역의 무역원활화이다. CEPA 3단계가 체결된 후 261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369종이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홍콩에서 제조업 신

11) 박복영(2004년 7월 15일), 「中國, 석유확보 위해 中東 진출 본격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04-16호.

청을 거쳐 CEPA 원산지규정에 부합하는 모든 홍콩산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주요 논의대상국

가. 상하이협력기구

상하이협력기구(SCO)는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테러리즘에 대응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결성된 기구로서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이다. 몽골, 파키스탄, 인도, 이란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20년 이전까지 SCO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제 창설, 회원국간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SCO 회원국의 전체 면적은 3,019만 평방킬로미터로 유라시아대륙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14억 6천만 명으로 세계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SCO가 더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 SCO의 모든 회원국은 체제전환경제, 지리적 인접성, 광활한 영토,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의 공통적인 특징을 있어, 비록 현재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은 저조한 수준에 있지만 SCO를 통하여 향후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나.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양국간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 연구는 △ 한·중 경제협력 현황 △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한·중 FTA의 무역 및 투자효과 △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양국은 2년간의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였고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1년간 한·중 FTA의 타당성에 대해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포괄범위, 산업별 영향 분석,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

한·중·일 FTA는 2000년 이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일체화의 신속한 발전과정에서 제기되었다.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큰 틀인 동아시아 FTA(EAFTA)의 구상 속에서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한·중 FTA와 한·일 FTA가 체결된 후 한·중·일(동북아시아) FTA를 형성하고 ASEAN과 결합되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3국이 각각 ASEAN+1 FTA를 체결하여 통합하는 방법이다.¹³⁾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협상을 마지막으로 한국측이 일본에 제시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일·중 FTA는 양국간의 정치적인 긴장관계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12) 국정브리핑(2006. 11. 17), 「한·중, 'FTA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 합의」.

13) Zhang(2006),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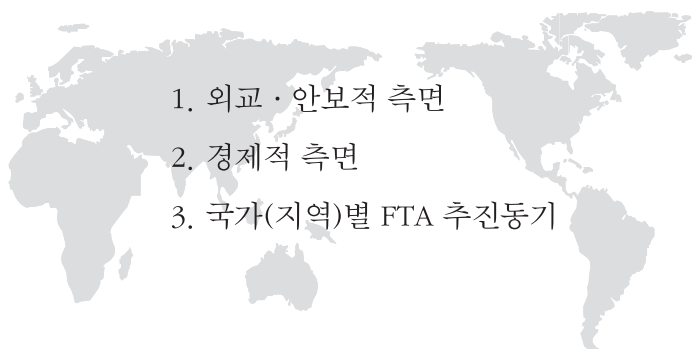
한·중 FTA를 체결하고 한·일 FTA와 결합하여 ASEAN+3의 형태로 결합되는 구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한·중·일 3국의 수출규모는 총 1조 6천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액의 15.8%에 달하였다. 3개국간의 역내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각각 전체 수출액의 4.6%, 11.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각각 전체 수출액의 21.8%,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체의 7.8%, 1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중·일 3국의 역내 교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¹⁴⁾

14) 김명신(2006. 12. 1), 「한·중·일 FTA이 체결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KOTRA 중국투자뉴스』.

제3장

중국 FTA 정책의 목적과 결정요인



FTA는 광의의 지역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인바, 지역주의의 발생원인에 관한 국제정치학적 접근시각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기능주의, 구성주의의 네 가지 관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현실주의 시각은 역내국가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안보 불안으로 인해 지역주의가 저해되거나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자유주의 시각은 역내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을 포함한 상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국의 국내 이익집단이나 정부가 시장 확대를 위해 지역주의를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자유주의 논리에 속하는 기능주의적 시각은 지역국가들의 상호의존이 심화될 경우에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를 통해 서로 협력한다는 이론이다. 구성주의 시각은 지역의 구성문제(construction of region)와 구성원들이 같은 지역에 속한다는 공동체의식(we feeling)의 문제를 중시하여 지역정체성(regional identity)이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¹⁵⁾

위의 네 가지 관점을 일국의 FTA 추진동기에 적용하면 현실주의는 안보적인 이익에 주목하고, 자유주의와 기능주의는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중시하며, 구성주의는 주로 지역질서와 관련된 이해관계와 연결된다. 즉 일국은 FTA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역질서상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일국은 FT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생존(안보)과 번영(경제발전) 및 영향력 확대(국제적 지위 상승)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 속에서 FTA가 부단히 발전함에 따라 일국의 FTA 참여목적은 다양화되고 있다. FTA는 무역창출효과·무역전환효과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적 이득 외에도 기타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수 많은 국가가 FTA에 참여하고 있음은 이를 통해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15) 이근(2003) 참고.

이다. 기본적으로 FTA는 무역을 발판으로 다원화된 경제협력 기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며, 참여국은 FTA를 통해 무역상 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이익(투자, 인력 교류, 자원개발 등), 경제외적 이익까지 추구하곤 한다. 심지어 FTA를 통해 회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상 회원국간에 상호지지의 생존·발전 공간을 보장할 수 있다.¹⁶⁾

요컨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일국의 FTA 정책은 생존과 번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일환이고, 국제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역 및 기타 경제적 편익, 나아가 경제외적 편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FTA 추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FTA 추진동기와 정책적 요인은 FTA를 추진하는 국가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적 이해와 접근을 토대로 하여, 중국이 갖는 특수한 FTA 추진목적과 정책적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중국이 대외정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생존, 번영, 영향력 확대, 경제적·경제외적 편익의 획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주요 요인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외교·안보적 측면

가. 중국의 외교정책과 FTA 정책

일국이 FTA를 추진하는 목적에는 자국의 대외정책 내지 외교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려는 것이 포함된다. 즉 FTA를 일국의 외교정책 실

16) 白當偉·陳濤高(2003); 憑雷(2005) 참고

행을 위한 하나의 기초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중국의 현 지도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에 대해 Medeiros and Fravel(2003)은 ‘중국의 신외교(China's New Diplomacy)’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최근 중국의 외교행위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로서 중국이 국제관계 무대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향상된 역량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상당히 탄력적이며 정교한 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 제한적이지만 국제제도와 국제 규범·기준을 자국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는 것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박두복(2003)은 최근 중국의 외교전략이 종래의 수세적·피동적 자세(韜光養晦)로부터 가능한 한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방향(有所作爲)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지역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바뀐 중국의 지역경제 통합 추진전략을 반영한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Hale(2003)은 중국이 경제 자유화 전략과 동아시아지역 리더로의 부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역내 FTA 등 지역협력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한, 중, 일 3국 중 가장 먼저 ASEAN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ASEAN+1 메커니즘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ASEAN과 ‘선심성’(자국에 상대적으로 덜 유리하게)의 조기자유화조치에 합의하면서까지 ASEAN과의 지역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⁷⁾

중국이 최근 동아시아에서 지역경제통합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장차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주의’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英明(2001)은 탈냉전시기에 동아시아에는 몇 개의 지역주의세력이 서로

17)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2002년 11월 ASEAN 10개국 중 후발참여국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4개국과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는 조기자유화조치에 합의했는데, 이 4개국이 모두 전통적인 농업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중국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견제하며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주의’, ASEAN 10국이 형성한 ‘ASEAN주의’(ASEAN-ism), 일본과 중국이 각기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아주의’가 병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중국 지도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국이 역내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소위 ‘화평굴기(和平崛起)’(평화적으로 우뚝 일어선다)라는 외교원칙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화평굴기’의 개념 속에는 역내 주도권 강화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 현 지도부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중국 개혁개방포럼의 정비젠(鄭必堅) 이사장은 화평굴기의 개념에 대해 ‘문명대국’의 이미지로 세계의 민족(의 숲) 속에서 우뚝 솟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의 역사발전에서 볼 때 중국의 평화적 발전 혹은 평화적 부상은 중국인의 100여 년 강국화의 꿈을 실현하고 중화문명의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⁸⁾

중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최대 이슈는 초강대국 미국과 어떻게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전개해나가는지의 문제이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서방의 시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중국의 경제학자 張鴻(2005)는 미국 등 서방국인들이 여전히 냉전시대의 사고를 유지하여 중국의 강대국화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의 빠른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대중국 우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武心波(2002)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행정부가 ‘신(新)아·태전략’하에 중국을 미래의 ‘가상 적’으로 간주하고 일·한~대만~필리핀~싱가포르를 잇는 대중 포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여 중국은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은 가급적 줄이는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오진용(2003)은 중국의 최

18) 『中時晚報』(대만, 2006년 6월 14일)

근 대미관계 전략의 핵심은 미국에 대해 협조와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립하고 있다. 클린턴 정권 시기에 미국은 중국을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보았으나, 현 부시 대통령의 1기 때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봄으로써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는 시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9월 21일 미국의 로버트 졸릭(Robert Zolic) 국무차관은 뉴욕에서 행한 연설에서 새로운 개념인 ‘stakeholder’로서 중국을 표현했다.¹⁹⁾ 졸릭은 중국이 이미 국제체계에 융합되었고 점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나 앞으로 중국은 이 세계체계 속에서 ‘책임 있는 stakeholder’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국제사회의 중대한 이해관계자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현 지도부는 ‘조화외교(和諧外交)’라는 새로운 개념을 개발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여러 국제무대에서 ‘조화’를 중국의 신외교정책의 핵심 사상으로 강조하고 있다.²¹⁾ ‘조화외교’를 문자적 의미로 보면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의 존중, 공동발전 모색 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미국에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사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19) 당시 로버트 졸릭(Robert Zolic)은 미·중 고위급 전략 회담의 미국 대표였으며, ‘stakeholder’의 의미는 이해관계자, 지분소유자 혹은 공동경영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 이후 베이징 방문한 미국의 스노 재무장관 및 럽스펠드 국방장관 모두 ‘stakeholder’라는 용어로 미·중 상호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21) 후 주석은 2005년에 UN에서 행한 연설에서 ‘조화세계(和諧世界)’를 힘써 이룩하자고 제안했고, 2006년 4월 예일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이 개념을 재차 제기했다. 후 주석은 2006년 6월 15일 상하이협력기구의 제6차 정상회담 폐회시에 ‘조화지역(和諧地區)’을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했고, 6월 17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상호협력 및 신뢰구축 협의회(CICA)’ 정상회의에서는 ‘조화의 아시아(和諧亞洲)’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전의 ‘도광양회(韜光養晦)’, ‘화평굴기(和平崛起)’ 사상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피동적·중립적으로 순응하는 태도였다면, ‘조화외교’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차별화한 가치관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중국이 주도해온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조화외교’의 미묘한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 SCO는 당사국간 국경안전문제를 의제로 삼아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6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출범했다. 이후 SCO는 역내 정치, 경제, 군사, 안보적 협력체제로 빠르게 발전하였고, 2005년에는 인도, 파키스탄, 몽골, 이란 등 4개국이 옵서버로 참여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조화외교’ 사상과 이에 입각한 SCO 정신은 인접국의 호감을 얻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²³⁾ 이런 추세라면 보다 많은 국가가 SCO에 가입하게 되어 중국이 말하는 ‘조화지역(和諧地區)’ 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인접국가 중 일부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가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빨리 이 흐름에 편승(bandwagon)하려는 선택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SCO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CICA(아시아 상호협력 및 신뢰구축 협의회)의 경우 현재 회원국 17개국 중에는 SCO의 6개 회원국과 4개 옵서버국, 그리고 협력파트너로 명명된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주도의 SCO 참여국이 전체의 64%를 점유하고 있다.

22) 『中國時報』(2006년 6월 19일자), 「北京 “和諧外交”討好 歐亞矚目」, A13(兩岸新聞)면 참고.

23) SCO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http://www.sectSCO.org/html/00001.html>)에서는 SCO의 설립 목적과 지향 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SCO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간의 상호신뢰, 선린우호를 강화하고 회원국간의 정치, 경제무역, 과학기술, 문화, 교육, 에너지, 교통, 여행, 환경보호, 기타 영역의 효과적인 협력을 장려하며 지역의 평화, 안보, 안정을 수호·보장하는 데 함께 노력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 창출에 노력하는 것이다. SCO는 대내관계에서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상, 다양한 문명의 존중, 공동발전 추구’의 ‘상하이 정신’을 준수하며, 대외관계에서는 폐쇄적 블록을 추구하지 않으며, 기타 국가·지역에 대립하지 않는다.”

‘조화외교’ 사상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차별화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후 주석이 2006년 6월 15일 SCO 제6차 정상회담에서 행한 연설에서 제기한 소위 ‘후쓰텐(胡四點·네 가지 건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첫째,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안보체제를 건립할 때 각국의 국가통일 수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만 독립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둘째, 각종 문명의 상호 포용을 주창함으로써 ‘문명충돌론’을 반박하고 있다. 셋째, 다지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단극주의의 불합리성을 돌출시키고 있다. 넷째,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해 상생의 이익을 도모하자고 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통상질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강대국간의 경쟁에서 지역블록(regional bloc)간의 경쟁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미 세계무역총액의 50~60%는 지역경제블록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단일국가에 비해 지역경제블록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촉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²⁴⁾ 경제블록간 경쟁의 대표적 예로서 미국은 ‘중동 FTA 정책’을 마련하여 2013년까지 대부분의 중동국가와 FTA를 체결할 계획이고, EU는 ‘EU·지중해 이니셔티브’에 따라 2010년까지 양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을 추진 중이며, 중국도 2005년부터 GCC와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

경제블록간의 경쟁시대에서 중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수년간 중국이 추진해온 경제통합 대상지역·국가는 중화권과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북아, 러시아, 심지어 중동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장차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으로 변화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陈冰(2006)은 ‘조화외교’와 ‘후쓰텐(胡四點)’이 중국의 미래 외교정책의 로드맵

24) 温耀慶(2005) 참고

이고 새로운 전략구조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며, 특히 새 전략이 유라시아 대륙을 전략적 근거지로 보는 미중유의 대전략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의 늪에 빠져 동진(東進)할 수 없을 때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제 측면에서 협력을 가속화함으로써 미국의 위협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유라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과 역내 경제협력을 가속화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시장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중국 상품과 기술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는 동시에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SCO를 매개로 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경제권을 발전시켜 동부의 미국·일본 시장과 서부의 유럽시장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권에서 자국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SCO를 자국이 주창하는 ‘조화세계’라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건립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지역통합 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권의 형성을 지향한다면, 이는 SCO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GCC, ASEAN, 동북아 등 지역을 궁극적으로 중국 중심의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 중국이 SCO, 남아시아, GCC, ASEAN, 동북아 등의 지역들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FTA는 궁극적으로는 거대한 유라시아 FTA라는 원대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중국의 최종 목표는 장차 자국 중심의 유라시아 FTA가 EU, FTAA와 함께 세계적인 삼축정립 구도를 형성하려는 것일 수 있다.

나. 중국의 안보정책과 FTA 정책

중국은 인접국과의 FTA 추진에서 비경제적 요인 내지 국제정치적·안보적 측

면의 의의를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宋群(2004)은 대국적(大局的) 관점에서 볼 때 중·ASEAN FTA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안보 등 측면에서도 의의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蔡宏明(2003)은 중국이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세계 각국, 특히 개도국과의 쌍무관계를 심화하려는 중요한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략은 수출 시장 다변화나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의 추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도국과의 남남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현대화 건설’ 추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개도국 그룹의 협상카드를 증가시키는 것, 글로벌화에 따른 리스크나 역외로부터 오는 각종 충격에 대응하려는 것 등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FTA는 안보협력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ASEAN+1을 둘러싼 중국의 구상의 밑바탕에는 안보의 의미가 짙게 깔려 있으며 역내 경제통합 추진을 통해 역내 안보질서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ASEAN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보협력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ASEAN에 FTA 협상을 공식 제안한 2000년 11월 이전에 이미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적인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해 놓았다. 배공찬(2003)에 따르면 중국은 1999~2000년 ASEAN 국가들에 대해 정상급 및 고위급 방문외교를 집중적으로 펼쳐 ASEAN 10개국 전체와 개별적으로 양자 차원의 미래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원칙과 ‘하나의 중국(One China Policy)’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와는 방위산업 협력, 태국과는 군사·외교, 인도네시아와는 광범위한 지역안보와 국제질서 문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와는 군사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상호협력의 범위를 포괄적 군사안보협력분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어서 중국은 2001년 11월에 10년내 체결을 목표로 하는 중·ASEAN 협상을

개시했고, 2002년 11월에 FTA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2015년까지 FTA를 정식 출범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2003년 10월 8일에 TAC에 전격적으로 가입하고 중·ASEAN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선포했다. 이는 중국이 타국과 공동선언을 행한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관계이다.

Medeiros and Fravel(2003)은 중국이 남사군도 등을 둘러싼 ASEAN과의 오래된 영토주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히 양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까지 2002년에 관련 행동지침 공동선언에 서명한 것 역시 역내 정치·경제 무대에서의 주도권 확보 내지 안보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2003년 6월 프놈펜에서 열린 ASEAN 지역안보포럼(ARF)에서 아시아지역의 군사교류를 증대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은 ASEAN+3이나 한·중·일 3국간의 지역경제협력 메커니즘에서도 안보 논의를 개입시키고 있다. 2001년 11월 5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제5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ASEAN+3이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정치와 안보 차원의 대화와 협력을 점차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중·일 3국 관계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3국 정상의 공동선언에서 ‘14개 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안보협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 역시 중국측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역내 헤게모니를 도모하는 중국에 있어 FTA는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 환안하면 중국은 인접국·지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를 역내 주도권 확보를 촉진하는 수단과 통로로 이용할 수 있다. 정치적, 군사적, 역사적, 이념적 배경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역내국가들은 중국의 대국화나 영향력 확대 추세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며 심지어 위협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내에서 때때로 회자되곤 하는 소위 ‘중국위협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만일 FTA가 이러한 우려나 위협의식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중국은 당연히 FTA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FTA는 일견 참여국의 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경제제도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중국이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호의적’인 행위로 비쳐지기 쉬울 것이다. Hale and Hale(2003)은 최근 중국이 인접국과의 FT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역내 메커니즘을 통한 지역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접국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갖는 우려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 중국의 FTA 추진의 기본 이념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외교·안보적 목적에 대하여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중국이 추진하는 FTA에는 대국(大國)적인 의식형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FTA를 추진하면서 자국과 인접국의 구도를 대국(大國)과 주변국의 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관련 논문 중 거의 대부분은 ‘인접국’ 내지 ‘이웃국가’ 라는 표현 대신에 ‘주변국’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이와 관련하여 Medeiros and Fravel(2003)은 최근 중국 언론에서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피해자 의식(受害者心態)’을 버리고 ‘대국 의식(大國心態)’을 지닐 것을 촉구하는 논평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대국외교(大國關係)’를 중시하면서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응분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²⁵⁾를 펴고 있는 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국의식’은 자칫 패권주의의 내지 역내 패권경쟁으로 연결되기 쉽다. 이와 관련하여, 宋群(2004) 등 일부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이 어려운 주요 원인

25) 전술한 ‘有所作爲’ 논리를 말함.

으로 강력한 주도국이 결여되어 있는 점, ASEAN+1 메커니즘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점,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운동에서 주도국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물론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최대 영토와 최대 인구 보유국인 동시에 유일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므로 중국이 ‘대국의식’이나 역내 통합을 주도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촉진을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주도국이 등장하는 것보다는 역내국가들이 서로의 존재를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동일한 지역에 속한다는 공동체의식(we feeling)을 갖고서 다자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²⁶⁾

만일 중국이 인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국의식’을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적 의식형태와 결합시킨다면 이는 곧 배타적 지역주의로 귀착할 가능성이 있다. 李英明(2001)은 오늘날 중국이 제창하는 민족주의는 서방과 중국을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므로 ‘문화민족주의’ 내지 ‘중국식 동방주의(Orientalism)’로 발전하기 쉽고, ‘중화문화’의 적용범위에 동남아와 동북아, 심지어 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시키는 일종의 ‘중화문화 우월론’ 내지 중국식의 문화 패권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SEAN+1 구도는 안보적 결속을 동시에 다져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러한 비판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 그리고 동남아 화교권과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하여 배타적인 ‘중화경제권’ 블록을 지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6) 이 근(2003) 참고

2. 경제적 측면

가. 중국의 대내외 경제정책과 FTA 정책의 연관성

FTA는 무역을 발판으로 다원화된 경제협력 기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므로 참여국은 FTA를 통해 무역상의 이익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무역대국에서 무역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정책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에 있다. 張鴻(2005)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수출지향의 무역전략을 실시하여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으나 수출물량 증대에 치중한 결과로 과다한 자원소모, 무역마찰 심화, 국제경쟁력 향상 부진 등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과제팀(2005)은 금후 중국이 대외경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무역마찰 심화에의 대응, 해외 자원·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국제 분업체계상의 위상 제고, 중·미 무역불균형 문제 처리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²⁷⁾

따라서 향후 중국의 무역정책은 해외자원 확보, 무역마찰 회피, 국제경쟁력 제고, 대미 통상정책 등에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고, 이 정책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FTA는 중국이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된다.

27) 중국은 무역마찰 회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간의 균형발전, 산업고도화 등을 목적으로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출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월 알루미늄, 원피 등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하고 일부 비철금속과 농약 등에 대한 수출환급률을 5%로 인하한 데 이어, 9월에는 소금과 시멘트를 제외한 모든 비금속류 품목, 목탄, 일부 목재에 대한 수출환급을 취소하였다. 또한 2006년 11월에는 석탄, 니켈, 원유 등 110개 수출품에 대하여 잠정 수출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우선 중국은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소위 ‘走出去’ 전략과 FTA 전략을 연계하여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한다).

둘째, 오늘날 세계에서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하는 나라가 된 중국은 갈수록 심화되는 무역마찰과 무역장벽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개도국과의 FTA를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FTA 추진 대상국이 비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선진국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개도국들을 개척해야 할 수출시장으로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姚戰琪(2005)는 중국 가전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도국을 잠재시장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도국 시장은 가전제품의 생명주기상 성장기에 있으므로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제품이 개도국의 소득수준 및 소득구조 특성에 잘 부합하여 관련 기술과 설비, 부품의 수출 증가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徐雪(2005)은 중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서방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써 섬유산업 미발달국인 러시아, 몽골, ASEAN 일부 국가 등에 진출하여, 이 국가들의 쿼터를 이용해 구미시장에 수출하는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은 WTO에 가입할 때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으로 분류되어 서방의 반덤핑 내지 세이프가드 조치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에 대응하여 FTA 추진을 통해 상대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인정을 유도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이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MES를 인정받은 것이 좋은 예이다.

셋째, 중국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 분업체계상 위상 제고,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대외무역구조의 고도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FTA를 활용하고 있다. 홍콩·마카오와의 FTA인 CEPA가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은 CEPA

를 통해 중국과 홍콩(미카오)간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통합을 촉진함으로써 홍콩의 자본, 경험, 기술을 도입하여 중국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공무역구조의 고도화, 산업구조 조정, 관리방식 개선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도모해왔다. 또한 중국은 최근 중·홍콩 CEPA보다 더욱 개방적인 내용을 담게 될 중·대만 소지역(sub-regional) FTA의 초보적 구상을 내놓았다. 이 구상은 중국의 푸젠(福建)성과 대만을 하나의 경제특구로 설정하여 대만의 산업을 적극 유치하려는 것이며, 푸젠성 당국은 거의 2년간의 연구 후 2005년에 ‘해협경제합작구(海峽經濟合作區)’ 건립 구상을 중앙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²⁸⁾ 한편 중국은 미국 등 선진국의 대중 첨단제품 수출 규제²⁹⁾를 회피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FTA를 통해 수입지역을 다변화하거나 우회적으로 수입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중국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통상관계에서 갈수록 확대되는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통상압력(위안화 평가절상, 시장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도 FTA를 증시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FTA의 효과는 단기적·소극적인 것과 장기적·적극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전술했듯이 비서방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 저하, 대미 우회수출 또는 마찰 회피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후자는 중국이 인접지역은 물론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자국 중심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28) 聯合報(대만, 2005. 3. 12), 「北京研擬 閩台經濟特區」.

29) 2006년 7월 초에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는 47종의 하이테크 제품·설비의 대중 수출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제한대상으로는 비행기, 정밀선반, 레이더 감추회피 스텔스 비행기 부품, 일부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전자설계제품, 고속컴퓨터, 선진통신설비, 코드번호시스템, 감추기·레이더, 항법장치, 잠수함제품, 비행기·로켓 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업자는 중국기업에 판매하는 하이테크설비가 중국의 군사부문에 사용되는 것을 필히 방지해야 하고 중국기업에 미국 하이테크설비의 사용상황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聯合報』(대만), 2006. 7. 16)

중국이 거국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 전략 역시 FTA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서부 내륙지역은 지정학적인 제약 때문에 동부 연해지역과 달리 세계시장의 중심인 태평양 연해지역과의 무역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서부지역과 인접한 국가·지역과의 경제통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이 ASEAN은 물론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 지역들에서의 영향력 확대, 자원확보, 새로운 시장 육성 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부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양하다. 일례로 중국의 상무부 등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ASEAN과의 FTA 추진으로 자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제조업부문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ASEAN과의 FTA를 통해 수출증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동남아는 세계에서 화교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므로 중국이 이 화교들을 매개로 하여 ASEAN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는나 실리적으로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9년 말 현재 국외 화교인구(대만, 홍콩, 마카오 거주자 제외) 약 3,500만 명의 63.2%가 ASEAN의 주요 국가인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네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에서 화교의 자본력은 상장주식자본의 50~81%를 점유하고 있다(표 3-1 참고). 동남아 전체로 보면, 화교계 기업은 이 지역 경제력의 70% 이상, 대외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을 포함한 전통산업에서 금융산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ASEAN과의 FTA를 통해 동남아 화교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자본을 활용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1. ASEAN 주요 국가에서 화교의 인구비율 및 자본력

(단위: %)

	인구 비율	주식시장 상장기업 자본율
싱가포르	77.3	81
태국	13.6	81
말레이시아	29.2	69
인도네시아	3.2	73
필리핀	1.5	50~60

자료: East Asia Analytical Unit(1998)을 인용한 오용석(2003)에서 재인용

셋째, 동남아는 중국 서부지역의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서부대개발 전략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넷째, ASEAN은 장차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중점지역이 될 것이다.

다섯째, 일본경제의 장기적인 불황 여파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필두로 하던 국제 분업구조가 약화되었으므로, 중·ASEAN FTA는 장차 중국 중심의 역내 국제 분업패턴 구축에 유리하다.

여섯째, 중·ASEAN FTA는 지역주의 확산이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세계화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일곱째, 중·ASEAN FTA는 인구 17억 명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서³⁰⁾ 이 지역의 경제력과 국제무대 발언권을 향상시켜 장차 NAFTA,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하도록 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동남아의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저하시키고 역내에서 미국, 일본을 능가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³¹⁾

30) Krumm and Kharas(2003)는 중·ASEAN FTA가 성립되면 그 역내 경제규모가 총인구 17억 명, 총 GDP 약 2조 달러(현재는 일본 GDP의 1/2 수준이지만 현재의 성장률이 지속된다면 금후 5~10년 내에 일본을 능가), 역내 교역규모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 FTA와 ‘走出去’ 전략의 연계

전술했듯이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는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에 속하며, 중국은 이를 위해 ‘쩌우추취(走出去)’ 전략과 FTA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쩌우추취’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이는 ‘인진라이(引進來·외자 유치)’와 함께 현재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의 ‘쩌우추취’ 전략은 기업의 해외진출, 즉 해외투자와 다국적 경영(외국기업에 대한 M&A 포함)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촉진, 선진기술 도입, 부족한 재화, 특히 전략적인 자원·에너지의 공급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³²⁾

중국은 최근에 특히 자원·에너지 확보를 위한 ‘쩌우추취’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³³⁾ 이 때문에 석유 등 전략적인 광물자원의 수요가 막대하며 이 자원들에 대한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원들의 장기적·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는 일은 중국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 있다.

중국의 국토자원부는 중국의 자원매장량, 생산능력, 자원수요를 분석할 때 2020년에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5종의 전략적 광물자원 중 19종이 부족 혹은 엄중한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예를 들면

31) 蔡宏明(2003), 陳迎春(2003) 참고

32) 憑赫(2005), 劉光溪·陳泰鋒(2005) 참고

33) 중국의 군사대국화 추세의 일례로, 군 총장비부 과기위원회 부주임 왕즈위안(汪致遠) 장장은 2006년 3월 초에 “중국 군대는 항공모함을 자체적으로 연구·제작하여 항모 함대를 발전시킬 것이며”, “항공모함은 대국이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중국은 대국이고 해안선이 길며 해양이익을 보호해야 하므로, 항공모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中國時報』(대만), 「超俄趕美 解放軍自建航母艦隊」, 2006년 3월 11일)

2020년에 석유, 크롬, 코발트, 백금, 스트론튬(Sr)에 대한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60% 내외, 90% 이상, 60% 이상, 90% 이상, 9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계 광물자원의 매장지역은 주로 중국의 인접지역과 북미, 남미, 아프리카, 동유럽, 호주 등에 분포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중국의 인접지역과 국가에 전략적인 광물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접경한 16개국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천연가스 42%, 철 33.9%, 동 22.6%, 니켈 23.1%, 텅스텐 26.6%, 주석 35.4%, 금 17.5%, 칼륨 27.6% 등이다.³⁴⁾

중국이 ASEAN, 호주, 칠레, SCO, GCC 등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은 이 국가·지역들의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중국이 FTA의 예비단계로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經濟貿易合作區)’ 또한 주로 자원부국에 집중적으로 설립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초부터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건립하기 시작했으며 금후 50개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건립할 계획이다.³⁵⁾ 2006년 6월 현재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설립 지점으로 선정된 국가는 몽골,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등이다. 이 국가들은 모두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이 추진하는 FTA의 상당 부분은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짜우추취’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 기업들이 ‘도시는 피하고 농촌으로 갈 것’을 장려하고 있다. 여기서 농촌은 경제발전수준이 중국보다 낙후된 국가·지역을 가리키며 중국이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는 국가·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외진출 대상지로서 주로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 내지 저개발국을 선택하고 있다.³⁶⁾

34) 憑飛(2005) 참고.

35) 『經濟日報』(2006년 6월 21일자), 「大陸將建50個境外經貿區」, 대만.

3.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이상에서는 중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추구하는 국가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주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였다. 우선 외교·안보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중시하는 요인으로는 △ 지역 리더십 강화, △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은 자국 중심의 ‘동아주의(Sino-centric East-Asianism)’를 형성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지역내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잠식시키며 장기적으로는 EU, NAFTA에 견줄 만한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FTA’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중국이 FTA를 추진하는 동기로는 △ 해외 에너지·원자재 확보 △ 무역마찰 회피(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대(對)서구 우회수출 등) △ MES 승인 유도 △ 산업경쟁력 제고 △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 서부대개발 및 동북진흥의 촉진 △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들은 다시 보다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분하여 볼 수 있다. 에너지·원자재 확보, 새로운 시장의 개척·육성, 대(對)서구 우회수출, 산업경쟁력 제고, 서부·동북 개발 촉진 등은 중국이 FTA를 추진하면서 기대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로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MES 인정 유도, 미국 통상압력에의 대응, 해외 화교와의 연계 강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며 이차적인 동기로서 FTA를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FTA 추진을 통해 국내 경제개혁이나 구조조정

36) 林今淑(2005) 참고

추진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여론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이 통치해온 전체주의적 정치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당·정은 이와 같은 반대 세력이나 여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대 세력이나 여론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려는 동기는 약할 것이다. 기타 전략적 동기로서 중국은 FTA 추진을 통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증대 등을 추구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것 역시 직접적·일차적 동기라기보다는 부차적·이차적 동기로 볼 수 있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 중시하는 보다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나 목적은 △ 지역 리더십 강화 △ 대미 견제와 차별화 △ 해외 에너지·원자재 확보 △ 새로운 시장 개척·육성 △ 대(對)서구 우회수출 △ 산업경쟁력 제고 △ 서부·동북 개발 촉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주요 동기가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FTA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중국의 FTA 추진동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국가(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외교·안보적인 목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중심의 지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는 중국의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이 자국과 인접한 지역(국가)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소위 ‘조화외교’의 기치 아래 미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FTA 추진 상대국가(지역)로부터 에너지·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려는 동기는 ASEAN, 남아시아, SCO, GCC, 호주, 남미, SACU, 아이슬란드(알루미늄 풍부) 등 천연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산업경쟁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FTA 추진동기는 주로 중국보다 공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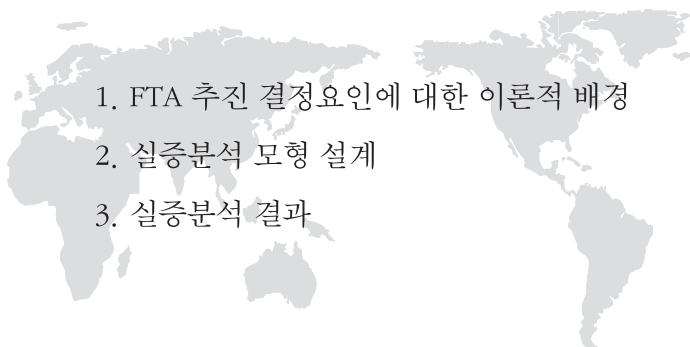
가 선진적이거나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국가들과의 추진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의 FTA에서는 주로 이 국가들의 발달한 서비스산업으로부터 자본, 경험, 기술을 도입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조정, 관리방식 개선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한국, 대만, 홍콩 등과의 FTA에서는 이 국가들의 발달된 제조업분야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의 효율증진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시장의 개척·육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미래의 거대한 유망시장으로 빠르게 부상하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이다. 중국은 이 국가들을 대륙별 수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개도국 시장이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명주기상 성장기에 있어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중국제품이 개도국의 소득수준 및 소득구조의 특성에 잘 부합하며 관련 기술과 설비, 부품의 수출 증가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주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동기는 거의 모든 FTA 추진대상국가(지역)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에 대해서, 중국은 이 국가들이 다른 선진국과 FTA를 맺고 있는 점을 활용해 이 국가들을 통한 서구시장으로의 우회수출효과를 도모하고 있고, ASEAN, 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에 대해서는 주로 이 국가들의 선진국 수출쿼터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을 통한 서구 우회수출은 자유무역항인 홍콩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홍콩 수출의 상당 부분이 서구시장을 최종 시장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제4장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3. 실증분석 결과

앞서 제3장에서 중국이 갖는 특수한 FTA 추진동기와 정책적 요인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확장된 중력모형(gravity model)에 기초한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제3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대상국 선정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중력모형은 두 지역간의 무역량 규모를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그 기본원리는 두 지역의 공간적 상호작용의 견인력은 지역의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두 지역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력모형은 거리,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접경 여부, 언어 등 다양한 경제·지리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간 무역의 흐름을 더욱 잘 설명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1.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그동안 FTA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문헌은 FTA 체결이 가져올 후생효과에 대한 이론적 혹은 계량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반면에 국가간 FTA 추진의 결정요인에 대한 계량분석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하지만 FTA가 국가간 경제 및 정치 관계의 원천(source)이라기보다는 반응(response)을 나타내는 내생적(endogenous) 변수임을 고려할 때 FTA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국가간 FTA 추진 여부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Krugman(1991) 이후 FTA의 후생효과에 대한 분석을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FTA 결정요인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 체결에 따른 순수 후생효과는 국가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증대하며 따라서 거리가 가까운 두 국가일수록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두 국가가 국경을 접하거나 동일한 대륙에 위치할수록 관세철폐에 따른

효용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근접한 국가간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셋째, 양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FTA의 순수 후생증진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넷째, 양국의 경제규모 크기가 비슷할수록 FTA의 순수 후생증진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섯째, FTA 체결 당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을수록 FTA의 순수 후생증진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섯째, 국가간 요소부존비율의 차이가 클수록 FTA의 순수 후생증진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FTA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다.

2. 실증분석 모형 설계

가. 분석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력모형의 설명변수에 대상국의 경제·지리적 변수를 포함시키는 한편 종속변수에는 중국과의 FTA 추진 여부를 표시하는 이분(binary)값을 표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종속변수는 중국이 특정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1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이산적(discrete)일 경우의 계량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LPM, Logit, Probit 모형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Bayesian approach와 Gibbs sampler를 회귀분석에 접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실

증분식 결과를 제시하기 이전에 Probit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계수값(coefficient)에 대한 해석상의 유의점에 대해 우선 간단히 설명하도록 한다.³⁷⁾

일반적으로 설명변수의 기울기계수는 설명변수값의 1단위 변화가 종속변수의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Probit 모형은 어떤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다루기 때문에 계수값을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Probit 모형의 경우 다음과 같이 확률의 변화를 계산하는 데 모든 설명변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begin{aligned} Pr(y_i = 1 | X_i) &= Pr\left(\frac{\epsilon_i}{\sigma} > -\frac{X_i\beta}{\sigma}\right) \dots\dots\dots (4-1) \\ &= Pr\left(\frac{\epsilon_i}{\sigma} < \frac{X_i\beta}{\sigma}\right) \\ &= F\left(\frac{X_i\beta}{\sigma}\right) \end{aligned}$$

$$\begin{aligned} Pr(y_i = 0 | X_i) &= 1 - Pr(y_i = 1 | X_i) \dots\dots\dots (4-2) \\ &= 1 - F\left(\frac{X_i\beta}{\sigma}\right) \\ &= F\left(-\frac{X_i\beta}{\sigma}\right) \end{aligned}$$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bit 모형에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하기 위해 설명변수가 연속적(continuous) 설명변수일 경우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37) Probit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W.H. Greene의 *Econometric Analysis* 또는 J.P. LeSage의 *Applied Econometrics using MATLAB*을 참고

$$\frac{\partial Pr(y_i = 1 \mid X_i)}{\partial X_i} = f(X_i \beta_i) \beta_i \dots\dots\dots (4-3)$$

또한 설명변수가 이산적 설명변수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계효과를 계산하기로 한다.

$$Prob(y \mid dummy = 1) - Prob(y \mid dummy = 0) \dots\dots\dots (4-4)$$

식 (4-3)은 Probit 모형에서 연속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계수값(β)에 표본평균에서 평가되는 확률분포값(f)을 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 (4-4)는 이산적 설명변수의 경우 특정 더미변수의 값이 1과 0을 취할 때 발생하는 확률 가능성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이산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접경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 BORD의 경우에 BORD=1인 경우와 BORD=0인 경우 중국이 FTA를 추진할 가능성을 각각 계산한 후 그 차이를 구함으로써 이 변수의 한계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

나. 분석모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력모형에 기초한 Probit 모형을 이용하여 누적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에 대한 결정요인들을 추정하고 이것이 중국의 FTA 추진전략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본 모형의 설명변수로는 상대국의 경제규모 및 경제구조, 중국과의 경제관계, 상대국의 자원부존 현황 그리고 지리적 특성들을 반영하는 변수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표 4-1]에 나타나 있듯이 상대국의 경제규모를 반영하는 변수

표 4-1. 분석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

구 분	설 명 변 수
상대국 경제규모(Economic size)	GDP, 1인당 GDP, 무역총액
상대국 경제구조(Economic structure)	농업, 서비스업 비중
양국간 경제관계(Interdependence)	무역 및 FDI 비중
상대국 자원부존(Natural resource)	석유부존, 광물자원 매장
양국간 지리적 특성(Geography)	거리, 접경
기타(Others)	식민통치

로는 국내총생산액, 1인당 국내총생산액, 무역총액을, 경제구조 변수로는 국내총생산에서 농업과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쌍무무역관계 변수로는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자원부존 변수로는 석유부존 여부 및 광물자원을, 지리적 변수로는 양국간 거리와 국경의 접경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간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기 위한 변수로서 과거 중국 영토의 통치 여부를 포함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제무역 연구에 널리 사용된 중력모형 방정식에 앞의 설명변수와 이산적 종속변수를 추가하여 식 (4-5)와 같이 모형을 확장하였다.

$$\begin{aligned}
 P(FTA_j = 1) = & \beta_0 + \beta_1 \ln(GDP_j) + \beta_2 \ln(GDPPC_j) + \beta_3 \ln(TV_j) \quad (4-5) \\
 & + \beta_4 AGRS + \beta_5 SERS_j \\
 & + \beta_6 BTS_j + \beta_7 FDIS_j \\
 & + \beta_8 OILD_j + \beta_9 ORED_j \\
 & + \beta_{10} \ln(DIS_j) + \beta_{11} BORD_j + \beta_{12} COLD_j \\
 & + \epsilon_j
 \end{aligned}$$

식 (4-5)에서 j 는 상대국을 나타내며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DP_j : j 국의 국내총생산량

GDP_{PC}_j : j 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량

TV_j : j 국의 수출입 총액

$AGRS_j$: j 국의 국내총생산량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SERS_j$: j 국의 국내총생산량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BTS_j : 중국과 j 국간의 수출입총액이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³⁸⁾

$FDIS_j$: j 국으로부터의 FDI가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³⁹⁾

$OILD_j$: j 국이 석유부존국이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⁴⁰⁾

$ORED_j$: j 국이 세계 15대 광석자원 부국이면 1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⁴¹⁾

DIS_j : 중국과 j 국간의 거리

$BORD_j$: 중국과 j 국의 국경이 접해 있는 경우 1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COLD_j$: 중국이 j 국의 식민통치하에 있었을 경우 1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주는 더미변수

38) 2005년 국별 무역비중은 미국(14.7%), 일본(14.5%), 홍콩(9.8%), 한국(7.8%), 독일(4.7%), 싱가포르(2.3%), 말레이시아(2.2%), 네덜란드(1.9%), 러시아(1.8%) 등의 순이다.

39) 2005년 국별 FDI 비중은 홍콩(31.3%), 한국(10.3%), 일본(9.0%), 미국(6.5%), 싱가포르(3.3%), 독일(1.7%) 등의 순이다.

40) 석유 더미변수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UAE,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등 총 36개 국가를 석유부존국으로 포함하고 있다.

41) 광석자원 더미변수의 경우 금, 은, 동, 아연, 철광석, 주석, 니켈, 텅스텐, 망간 등 22개의 주요 광석자원에 대하여 매장량이 세계 5위 이내에 포함되는 15개 국가(미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페루, 칠레, 멕시코, 폴란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캐나다, 몽골)를 광석자원 부국으로 포함하고 있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dataset*, CIA의 *The World Factbook*으로부터 얻었으며, 석유와 광석자원의 경우 BP의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등을 참고하였다. Cross section 분석에 포함한 국가들은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143개국이며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 중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농업비중, 제조업비중, 서비스업비중은 2005년 자료가 누락된 경우가 많아 2004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여부를 나타내는 종속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한다.

$$FTA_j = \begin{cases} 1 & : \text{if China is pursuing an FTA with country } j \\ 0 & : \text{otherwise} \end{cases} \quad (4-6)$$

본 모형에서는 2006년 말 현재 중국이 FTA를 추진 중인 34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1의 값을 주었는바 이 중 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칠레, 파키스탄과는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홍콩 및 마카오와는 CEPA를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한국, 일본, 브라질, 아이슬란드, 그리고 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과는 협상라운드나 진행 중이거나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과는 아직 공동연구 단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과 상대국간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는 $COLD_j$ 변수의 경우 20세기 이후

조차 지역 등의 형태로 중국의 영토를 점유했던 경험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1의 값을 주었다. 중력이론에 따르면 양국간의 FTA 체결 가능성은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양국간 경제관계가 보다 밀접할수록, 지리적 근접도가 높을수록 커지게 되며, 상대국의 경제구조나 자원부존 현황의 영향은 FTA를 추진하는 기준국가(즉 중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식 (4-5)의 GDP, 1인당 GDP, 무역총액, 무역비중, FDI 비중, 원유부존, 광석자원 매장량, 접경변수들에 대해서는 양(+)의 계수값이 기대되는 반면, 거리와 식민통치 변수에 대해서는 음(-)의 계수값이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실증분석 결과

가. 추정 결과

[표 4-2]는 식 (4-5)에 대한 Probit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변수의 계수값에 대한 추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국의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수출입총액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상대국의 농업비중과 서비스비중 모두 음(-)의 계수값을 보이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상대국의 대중 무역 및 FDI가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상대국의 천연자원은 모두 양(+)의 계수값을 가지며 석유부존과 광석자원 매장량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 분석모형의 추정 결과

설명변수	계수값	t-statistics
Constant	18.952	3.315
log(국내총생산)	0.011	0.028
log(1인당 국내총생산)	0.324	1.536
log(수출입 총액)	-0.157	-0.361
농업비중	-0.019	-0.635
서비스비중	-0.021	-1.327
중국에서의 무역비중	0.136	0.492
중국에서의 FDI 비중	-0.039	-0.110
석유부존 여부	0.928	2.084**
광석자원 매장	2.078	3.108**
log(거리)	-2.396	-3.928**
접경 여부	1.837	2.241**
식민통치 여부	-2.883	-1.759*
R-squared	0.635	

주: *와 **로 표시된 계수값은 각각 90%, 95%의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다섯째, 양국간의 지리적 변수 중 거리는 음(-)의 계수값을, 접경 여부는 양(+)의 계수값을 보이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섯째, 식민통치 여부의 경우 음(-)의 계수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본 분석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상대국의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천연자원 변수와 지리적 변수를 반영하는 추정치는 모두 중력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 농업비중, 서비스비중, 무역 및 투자 비중 등 상대국의 경제규모, 경제구조, 양국간 경제관계를 반영하는 순수 경제변수가 중국의 FTA 추진에 대한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범

의의 경제변수인 지리적 변수 및 석유·광물 등 자원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계수값의 크기(absolute magnitude) 측면에서도 다른 변수를 압도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이 지리적 근접성이 높거나 석유·철광석 등 에너지자원 부존량이 많은 국가와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과거 중국을 식민통치했던 국가와는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식민통치 더미변수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전통적인 선진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 결과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지도자로서 세계질서 재편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제3장에서 논의한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중국이 주로 역내 주도권의 선점 및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FTA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국이 국경을 따라 인접한 국가들(ASEAN,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과 이른바 소다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Probit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계수값은 연속적(continuous) 설명변수간의 상대적 영향의 크기에 대한 정보만 제시할 뿐 이산적인 종속변수에 대한 한계효과나 이산적 설명변수간의 상대적 영향의 크기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 추정 결과는 중국이 특정 국가와 FTA를 추진할 가능성에 있어 거리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이 갖는 영향보다 7.4배(=2.396/0.324)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중국이 두 국가 중 거리가 1% 더 가까운 국가와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2.396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Probit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점과 이를 고려한 올바른 한계효과 추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 한계효과 추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robit 모형은 확률의 변화를 계산하는 데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한계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식 (4-3)과 식 (4-4)에 의거하여 기율기계수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지리적 거리 등 연속변수에 대해서는 식 (4-3)을, 석유부존 등 이산변수에 대해서는 식 (4-4)를 이용하여 [표 4-3]과 같이 한계효과를 계산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고려할 경우 한계효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계효과와 상대적 크기는 광물자원 매장, 접경 여부, 지리적 거리, 석유부존 여부, 식민통치 여부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4-3. 분석모형의 한계효과

설명변수	한계효과	표본평균
log(국내총생산)	0.002	3.469
log(1인당 국내총생산)	0.064	8.019
log(수출입 총액)	-0.031	3.176
농업비중	-0.003	13.734
서비스비중	-0.004	54.876
중국에서의 무역비중	0.027	0.626
중국에서의 FDI 비중	-0.008	0.530
석유부존 여부	0.233	0.252
광물자원 매장	0.669	0.105
log(거리)	-0.472	8.942
접경 여부	0.590	0.112
식민통치 여부	-0.157	0.063

둘째,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중국이 주요 광석에 대한 자원부국과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0.669만큼 높다.

셋째,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중국이 국경을 접한 국가와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0.590만큼 높다.

넷째,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중국이 거리가 1% 더 가까운 국가와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0.472만큼 높다.

다섯째,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중국이 석유부존국가와 FTA를 추진할 가능성은 0.233만큼 높다.

마지막으로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중국이 피식민통치 경험이 없는 국가와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0.157만큼 높다.

이외에도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들의 한계효과는 국내총생산이 0.002, 1인당 국내총생산이 0.064, 수출입총액이 -0.03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비중은 -0.003, 서비스비중은 -0.004, 양국간 무역과 FDI 비중은 각각 0.027, -0.00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볼 때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 선정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지리적 근접성, 자원 확보 가능성, 정치 및 역사적 배경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제3장에서 살펴본 중국의 FTA 추진동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 실증분석 결과의 함의

전통적으로 FTA는 무역을 발판으로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려는 것이므로 참여국은 FTA를 통해 후생증진과 무역창출은 물론 투자 활성화, 인적 교류, 자원개발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은 FTA를 통해 서로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외교·안보적 편익을 추구하고

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FTA 추진전략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외교·안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FTA 추진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에 따른 무역비용 감소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고, 원부자재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은 경제적 동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FTA를 통해 무역마찰을 회피하는 한편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제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보다 주요한 결정요인으로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에너지 활용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구리, 니켈과 같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중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석유수출국이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소비의 급증으로 인하여 1993년부터 석유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세계 2위의 석유소비국인 동시에 3위의 석유수입국인 상태이다. 또한 석유의 수입의존도가 2004년 47.0%에서 2030년에는 8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석유 및 기타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원들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은 소위 ‘쩌우 추취’ 전략과 FTA 전략을 연계해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자유무역시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국가들과의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FTA를 추진 중인 GCC 6개국이 전 세계 석유매장량의 40%와 천연가스매장량의 23%, 상하이협력기구(SCO) 5개 회원국이 전

표 4-4. 중국의 FTA 추진 주요 대상국별 자원 현황

대상 국가·지역	주요 부존자원의 전 세계 매장 비중
GCC	석유(40%), 천연가스(23%)
러시아	석유(6%), 천연가스(27%), 철광석(20%), 금(7%), 텅스텐(9%), 마그네사이트(30%)
카자흐스탄	석유(3%), 천연가스(2%), 아연(14%), 크롬광(36%)
호주	금(12%), 은(12%), 아연(15%), 니켈(36%), 금홍석(46%), 철광석(16%), 코발트(21%), 티탄철광(48%), 망간(11%)
칠레	동(42%), 몰리브덴(13%)
브라질	철광석(7%), 망간(8%), 주석(9%), 니켈(7%), 보크사이트(8%)
남아프리카공화국	금(19%), 크롬광(12%), 질코늄광(37%), 티탄철광(15%), 금홍석(17%), 형석(18%)
인도네시아	주석(13%), 금(4%), 동(7%)
말레이시아	주석(16%)
인도	중정석(27%), 금홍석(14%), 질코늄광(9%), 티탄철광(7%), 복사이트(4%)

세계 천연가스매장량의 30%, 석탄매장량의 21%, 석유매장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호주가 전 세계 니켈매장량의 36%, 철광석매장량의 16%, 아연매장량의 15%, 인도가 전 세계 석탄매장량의 10%, 철광석매장량의 5%, 칠레가 전 세계 구리 매장량의 42%, 브라질이 전 세계 주석매장량의 9%, 망간매장량의 8%, 철광석매장량의 7%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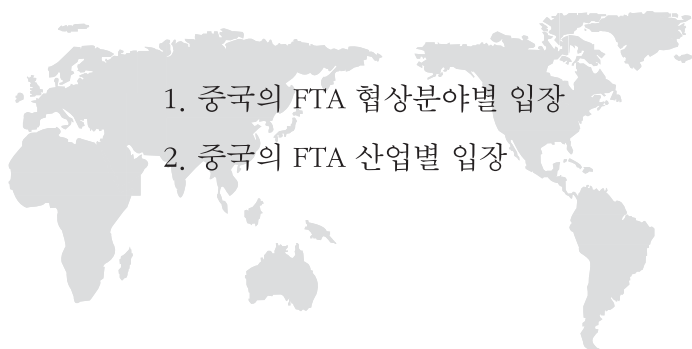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와 더불어 중국이 FTA를 추진하려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외교·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중국의 FTA 정책은 수출시장 확대 및 해외진출 추진은 물론 역내통합을 통한 안보차원의 국제적 협력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일본과 역내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FTA를 지역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주의’를 구축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중국은 인접국과의 FTA 추진에서 외교·안보적 측면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중국은 ASEAN 후발 4개국과 260여 개의 농산물 관세를 2004년부터 철폐하는 등 자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기자유화조치에 합의하면서까지 ASEAN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ASEAN의 대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중심의 역내 국제분업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나아가 이 지역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ASEAN+3’과 같은 지역경제협력의 구상에도 역내 경제통합 추진을 통해 안보질서의 변화를 함께 도모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중국은 FTA를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 및 역내 영향력 확대를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 ASEAN, 인도, GCC,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의 개별적인 FTA를 통해 궁극적으로 NAFTA, EU와 함께 세계 지역통합의 3대 축 가운데 하나를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던 이상의 논의는 본 장의 계량모형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바,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FTA 추진에 대한 결정요인 가운데 접경 여부·거리 등 지형학적 요인과 석유부존·광물자원 매장 등 지하자원 요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FTA를 추진함에 있어 인접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한 역내 주도권 확보라는 국제정치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제5장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산업별 주요 쟁점



1. 중국의 FTA 협상분야별 입장

중국과 주요 FTA 대상국이 체결한 협정문 및 공동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 중 상품무역분야에서 중요한 협상내용은 관세철폐와 원산지규정이며, FTA 협상대상으로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투자보장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킨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도 중요한 협상내용을 이루게 된다.

우선 상품무역분야를 살펴보면,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관세철폐, 위생 및 검역, 특정상품 규율 등의 경우 대상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세평가, 통관절차, 기술규정,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의 개별 사항에 대한 규정은 협상대상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산지 규정의 경우 HS 코드 변환을 기준으로 하는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과 특정 제품의 전체 가치 중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부가가치 기준(Value-added Criterion)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가 협상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 5-1. WTO 협정과 중국의 주요 FTA 간의 규율대상 비교

협정 (발효연도)	한·칠레 FTA (2004년)	중·ASEAN FTA (2005년)	중·칠레 FTA (2005년)	중·호주 FTA (추진)	중·뉴질랜드 FTA (추진)
1. 상품무역분야	○	○	○	○	○
최혜국대우	×	×	×	×	×
내국민대우	○	○	○	○	○
관세철폐	○	○	○	○	○
원산지규정	○	○	○	○	○
관세평가	○	×	×	○	○
통관절차	○	×	○	○	○

표 5-1. 계속

협정 (발효연도) 규율대상		한·칠레 FTA (2004년)	중·ASEAN FTA (2005년)	중·칠레 FTA (2005년)	중·호주 FTA (추진)	중·뉴질랜드 FTA (추진)
	기술규정의 상호인정	△	×	×	○	○
	위생 및 검역조치	○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
	반덤핑·상계조치	○	○	○	○	×
	특정 상품의 규율	×	×	×	×	×
2-1.	서비스무역분야	○	×	×	○	○
	특정 서비스의 규율	○	×	×	○	○
	자연인의 이동	○	×	×	○	○
2-2.	투자분야	○	×	×	○	○
3-1.	지식재산권분야	○	×	×	○	○
3-2.	정부조달분야	○	×	×	○	○
3-3.	기타 특정 분야					
	경쟁정책	○	×	×	○	○
	환경	×	×	○	×	×
	노동	×	×	○	×	×
	전자상거래	×	×	×	○	○
	경제기술협력	×	×	○	×	×
4.	조직규범분야					
	협정운영조직	○	○	○	○	○
	분쟁해결제도	○	○	○	○	○

주: 기체결 FTA는 협정문 기준으로, 추진 중인 국가는 FTA 가능성 공동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함.

○: 당해 사항의 전면적 규율, △: 당해 사항의 부분적 규율, ×: 당해 사항 규율 안함.

자료: 정인교·노재봉 편저, 「제4장 FTA의 주요 내용」,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p. 97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가. 관세철폐

우선 중·ASEAN FTA는 중국과 10개의 ASEAN 국가간의 협정이라기보다는 11개 국가가 개별 국가 자격으로 맺은 각각의 FTA를 중·ASEAN FTA라는 기본 협정의 틀 안에서 이끌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협상범위도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²⁾ 태국의 경우 오렌지, 커피, 차, 향료, 설탕, 유지, 야채 등 농산물을 비롯해 플라스틱, 고무제품, 방직품, 유리제품, 철강제품, 가전제품, 자동차와 그 부속품이 관세인하 대상이고, 자동차부품의 수입관세는 40%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이 현행 15%에서 오는 2007년 1월 8%, 2009년 5%로 낮춰지며 2012년부터는 관세가 철폐된다. ASEAN 10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 등 6개국은 2010년까지 대부분의 수출입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고,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무역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4개 회원국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까지 무관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FTA의 상품양허는 2004년부터 HS 01~08의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기자유화조치와 2005년 7월부터 주로 공산품을 대상으로 개시한 일반분야(Normal Track) 및 민감분야(Sensitive Track)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조기자유화조치의 대상품목은 국가별로 다르며 회원국은 언제라도 예외품목을 조기자유화조치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기자유화조치에는 주로 가축, 식용내장, 생선, 유제품, 기타 축산품, 묘목, 채소 및 과수와 견과류 등이 관세인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⁴³⁾

42) 현재 국가별 구체적 협상범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는 없으며, 국가별 단신이 유일한 자료원이어서 체계적인 협상범위 파악은 어려움이 있다.

조기자유화조치에 포함된 모든 품목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유화가 이행되었다. 제1카테고리 대상품목은 중국과 ASEAN 6개국의 경우 15% 이상, ASEAN 후발 4개국은 30% 이상의 최혜국(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을 포함하며, 2006년 1월 1일부터 완전 자유화되었다. 제2카테고리 품목은 중국과 ASEAN 6개국이 5~15% 사이(5%와 15% 포함), 후발 4개국은 15~30% 사이(15% 포함, 30% 제외)의 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을 포함하며, 2005년 1월 1일부로 완전 자유화되었다. 제3카테고리는 중국과 ASEAN 6개국은 5% 이하, 후발 4개국은 15% 이하의 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바 2004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었다.

중국과 브루나이·인도네시아⁴⁴⁾·미얀마·싱가포르·태국은 조기자유화조치에 대한 예외품목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하여 각각 30개(HS 8단위)와 15개(HS 9단위) 품목을 조기자유화조치에서 제외하였다.⁴⁵⁾

43) 해당 전 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HS 번호	해당 품목의 설명
01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물
02	육과 식용설육(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등)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무생무척추동물
04	낙농류, 조란, 천연꿀
05	기타 동물제품(동물털, 모피, 녹용, 산호 등)
06	살아 있는 수목, 절화, 장식용의 잎 등
07	식용 채소류, 식용 뿌리(Củ, 매니옥, 고구마 등)
08	식용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

자료: 정인교 외(2004), 「중·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월간 『KIEP 세계경제』, 2월호.

44) 인도네시아는 DDA 협상 결과에 따라 중국산 옥수수(sweet corn)에 대한 예외품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45) 캄보디아의 경우 살아 있는 돼지, 가금류의 고기, 신선 또는 냉장 채소류(토마토, 양파, 상추, 당근, 무 등), 과일(오렌지, 파인애플, 멜론, 파파야, 수박) 등이 제외되었으며, 베트남은 가금류의 고기, 레몬, 자몽, 감귤류 등이 제외되었다.

표 5-2. 중·ASEAN 조기자유화조치 관세인하표

(단위: %)

중국 MFN 적용 관세율	중·ASEAN FTA 관세율		
	2004년	2005년	2006년
1카테고리	10	5	0
2카테고리	5	0	0
3카테고리	0	0	0

자료: ACFTA Brochure(<http://www.aseansec.org/4920.htm>)

한편 일반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계획에서 중국과 ASEAN 10개국은 관세철폐 가속화계획(Fur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을 통해 관세의 조기철폐를 도모하였다. 일반분야 가운데 민감도가 덜한 품목에 대해 중국과 ASEAN 6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되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해 Fast Track을 도입한 것이다(단 ASEAN 후발 4개국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중국과 ASEAN 6개국은 2005년 7월 1일부터 대상품목 중 최소 4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5%까지 인하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는 대상품목을 60%까지 확대하여 관세율을 2010년까지 0%로 감축할 계획이다. 후발 4개국 중 베트남은 2009년 1월 1일, 라오스와 미얀마는 2010년 1월 1일, 캄보디아는 2012년 1월 1일부터 대상품목 중 최소 50% 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 0~5%까지 감축하여 2015년까지 0%로 감축할 예정이다. 각국의 관세인하 계획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 ASEAN 6개국과 중국의 일반분야 상품 관세인하표

MFN 적용관세율(x)	중·ASEAN FTA 양허 관세율 (1월 1일부터 적용)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x \geq 20\%$	20	12	5	0
$15\% < x < 20\%$	15	8	5	0
$10\% < x < 15\%$	10	8	5	0
$5\% < x < 10\%$	5	5	0	0
$x \leq 5\%$	현상 유지		0	0

주: *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http://www.aseansec.org/acfta_tif/annex_1.zip

표 5-4. 베트남의 일반분야 상품 관세인하표

MFN 적용관세율 (x)	중·ASEAN FTA 양허 관세율 (1월 1일부터 적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 x < 45\%$	35	30	30	25	20	15	5	0
$30\% < x < 35\%$	30	25	25	20	17	10	5	0
$25\% < x < 30\%$	25	20	20	15	15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0	10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 x < 10\%$	7	7	7	7	5	5	0-5	0
$5\% < x < 7\%$	5	5	5	5	5	5	0-5	0
$x \leq 5\%$	현상 유지				0			

주: *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http://www.aseansec.org/acfta_tif/annex_1.zip

표 5-5.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일반분야 상품 관세인하표

X = MFN 적용 관세율	중·ASEAN FTA 양허 관세율 (1월 1일부터 적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 x < 45\%$	35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25	25	20	20	10	5	0
$25\% < x < 30\%$	25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5	15	5	0-5	0
$10\% <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 x < 10\%$	7**	7**	7**	7**	7**	5	0-5	0
$5\% < x < 7\%$	5	5	5	5	5	5	0-5	0
$x \leq 5\%$	현상 유지				0			

주: *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

** 미얀마는 중ASEAN FTA 관세율을 2010년까지 7.5%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자료: http://www.aseansec.org/accfatiff/annex_1.zip

이와 같이 중·ASEAN FTA는 2005년 7월 1일부터 관세인하를 개시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중국과 ASEAN 6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0%로 인하하는 한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5~10년의 관세인하 연장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민감품목의 경우 중국과 ASEAN 6개국은 최대 400개 품목, 후발 4개국은 최대 500개 품목에 대해 각각 2018년, 2020년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할 계획이다.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Product)에 대한 관세는 2015년(중국, ASEAN 6), 또는 2018년(ASEAN 4)까지 50% 이하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품목별로 보면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관세 공산품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5-6. 중·ASEAN FTA의 민감(초민감) 품목 현황

구 분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농수산물(1~24류)	공산품(25~97류)	총계(HS 6단위)	
중 국	42(16.1)	219(83.9)	261(100.0)	100
인도네시아	25(6.3)	374(93.7)	399(100.0)	50
말레이시아	22(6.0)	346(94.0)	368(100.0)	96
필리핀	61(17.7)	283(82.3)	344(100.0)	77
싱가포르	2(100.0)	0(0.0)	2(100.0)	1
태 국	59(17.3)	283(82.7)	342(100.0)	100
브루나이	0(0.0)	100(100.0)	100(100.0)	34

자료: 산자부 및 ASEAN 사무국, HS 6단위 기준.

정재화(2005. 8. 29), 「중·ASEAN FTA의 주요 내용과 평가」에서 재인용

중·칠레 FTA에서 칠레 정부는 대중국 수출품목의 약 9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양허 카테고리를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등으로 구분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고,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은 자국에 가장 민감한 쌀을 자유화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했으며 종이품목도 대부분 예외품목으로 취급하였다.

중·칠레 FTA에서는 상대국가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관세를 동결하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칠레가 수입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범주는 Year 1, Year 5, Year 10, 제외대상으로 구분되었는바 구체적인 관세인하 계획은 [표 5-7]과 같다.⁴⁶⁾

또한 중국이 수입하는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범주는 Year 1, Year 2, Year 5와 Year 10, 제외대상으로 구분되며 [표 5-8]과 같이 관세인하 품목을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였다.⁴⁷⁾

46) 구체적인 해당 품목 리스트는 http://www.direcon.cl/pdf/CHILES_OFFER_TO_CHINA.pdf 참고

표 5-7. 칠레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인하 계획표

범주	발효 개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년 철폐	50%	100%								
5년 철폐	20%	40%	60%	80%	100%					
10년 철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 각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함.

자료: 「중·칠레 FTA 협상안」, Annex 1.

표 5-8. 중국의 칠레산 수입품 관세인하 계획표

범주	발효 개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년 철폐	20%	40%	60%	80%	100%					
10년 철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 각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 「중·칠레 FTA 협상안」, Annex 1.

중국이 칠레에 제시한 관세인하표에는 HS 8단위를 기준으로 7,550개에 대한 품목별 기준 관세율과 인하 범주가 표시되어 있다. 또한 중·칠레 FTA에서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관세 철폐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양국은 관세철폐 가속화 협상을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Goods)를 설립하였으며, 양국이 승인한 제품의 수입관세는 다른 어떤 수입관세율이나 철폐범주보다 우선하도록 하였다. 한편 양국 정부는 양자 세이프가드를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수입급증에 대한 조치방안에 합의하였다.

중·칠레 FTA에서는 민감품목 리스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신 자국 산업에 영향이 큰 품목을 관세철폐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중국이 제시한 민감품목에는 쌀·밀과 그 종자 및 식용유류(食用油類)와 목재류, 대부분의 종이류

47) 구체적인 해당 품목 리스트는 http://www.direcon.cl/pdf/chinas_final_offer_Final.pdf 참고

와 일부 섬유원료 등 21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관세인하 품목의 2.8%에 해당한다. 칠레는 섬유, 나사못, 볼트, 오븐, 냉장고, 세탁기 등 152개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전체 관세인하 품목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산 섬유류 수입이 칠레 전체 섬유 수입의 약 50%에 달함에 따라 칠레 정부는 중국산 섬유류의 관세일정을 가능한 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거나 일부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원산지규정

FTA 협상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원산지규정(ROO)⁴⁸에서 중·ASEAN FTA에서는 역내국가로부터의 내용물(ACFTA content)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부가가치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는 최종 제조공정이 역내 회원국내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하여 역외국(non-ACFTA)으로부터의 원료나 부품 및 생산품의 총가치가 해당 제품 FOB 가격의 60%를 넘지 않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ASEAN FTA 누적 원산지규정(Cumulative Rules of Origin)에서는 역내국가로부터의 내용물(ACFTA content)이 40% 이상인 경우에 최종 생산품의 작업 혹은 제조공정이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품목별 원산지규정 기준(Product specific criteria)에서는

48)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은 어느 정도 공정을 수행해야 협정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원산지규정은 양국의 산업경쟁력과 교역규모를 기초로 하여,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방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생산한 경우, 또는 제3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후자의 경우 HS 코드 변환을 기준으로 하는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과 특정 제품의 전체 가치 중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부가가치 기준(Value-added Criterion) 및 제조과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가공공정 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다.

한 국가에서 ‘충분한 변형(sufficient transformation)’을 거친 제품을 그 국가의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중·칠레 FTA 원산지규정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이하 VC)과 세번변경 기준(이하 CTC)을 함께 사용하였고, 최소허용(De minimis) 조항과 누적 기준(cumulation)⁴⁹⁾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가가치 기준은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원료의 가격을 감하는 공제법(build-down method)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역내 부가가치는 부속서에서 50% 이상으로 따로 규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40% 이상으로 하여 ASEAN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다.

한·칠레 FTA의 원산지규정 부속서에서 각류(heading)별로 VC에 따른 자세한 변경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칠레 FTA에서는 HS 2단위, 4단위별로 변경 사실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VC 함량에서 50%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구체 품목 리스트는 HS 2단위, 4단위, 6단위별로 구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칠레 FTA의 원산지규정 유형은 EU나 NAFTA 유형보다는 ASEAN 유형⁵⁰⁾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간단한 포맷에 2단위, 4단위, 6단위 기준을 혼용하고 있다. 이상의 중·ASEAN과 중·칠레 FTA의 원산지규정에 비추어볼 때 중국은 VC를 위주로 하면서 매우 명료하고 간단한 CTC를 보충하는 형태의 원산지규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호주 FTA의 경우 양국은 협상과정에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뚜렷한 입

49) 최소허용 기준(혹은 微量 기준)은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물품의 가치, 부피, 중량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경우 역내산 여부를 무시한다는 기준이며, 누적 기준은 역내산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국 타방의 영역에서 생산한 재료를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제도이다. 최소허용 기준은 원산지규정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주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인교·노재봉 (2005), p. 136, p. 146에서 인용.

50)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의 특징에 관하여는 정인교·노재봉(2005)의 관련 장과 정인교 외(2005)의 관련 장을 참고

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태국 및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CTC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채택한 바 있으며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와의 FTA에서는 VC 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뉴질랜드와의 원산지규정을 CTC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UAE, 말레이시아, ASEAN 및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CTC 기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⁵¹⁾

VC는 모든 무역제품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특정 산업정책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입원료의 역내 변형을 측정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 반면, 비용계산에 시간이 많이 들고 행정적인 부담(모든 허용비용을 법률적으로 통제해야 함)이 큰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자는 모든 생산활동과 비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무엇을 허용비용에 포함할 것인가와 무역 및 비무역 제품의 비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 더구나 부가가치 기준은 동일 공정과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동일 제품이 협정의 한 해당국에서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지만 두 국가에서의 비교생산가격상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해당국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CTC 기준은 환율, 국제가격 변동, 가격 위조, 생산과정의 일반비용 배분에 대한 논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문서보존과 비용계산 부담을 줄이며 행정처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은 호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싱가포르 등과의 무역협정에서 CTC에 의거한 원산지규정을 추진하였다. CTC 기준의 중대한 문제점은 일부 국가가 구체제품에 대한 CTC 요구조건을 VC 혹은 구체제조공정으로 보충하는 형식의 제품 상세규칙을 사용함

51) 호주정부의 FTA 협상에서 ROO에 대한 입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호주 외교통상부(DFAT) 홈페이지에 게재된 'Rules of Origin and Australia's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참고(http://www.dfat.gov.au/trade/050921_roos_background.html).

으로써 산업민감도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 무역제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⁵²⁾

원산지규정을 일관성 있게 채택·사용하면 각 생산자는 여러 FTA하의 원산지 규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공정을 재배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보존과 인증절차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거래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호주 모두 기존에 자국이 사용하였던 원산지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투자보장

FTA 협정에서 투자 및 서비스무역과 관련해서는 GATS 및 기존 투자협정의 외 추가적인 개방 및 자유화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선택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1994년 이전에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상품무역 자유화만을 다루었으나 최근의 FTA 내용은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 환경표준, 투자, 농업, 경쟁정책 등 민감한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이 체결한 중·ASEAN 및 중·칠레 FTA가 상품무역분야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이 협정들은 포괄적인 FTA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6년 11월 체결한 중·파키스탄 FTA에서는 투자 촉진과 보호, 징수, 손해보상 및 투자분쟁 해결 등의 사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향후 중국의 FTA 추진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ASEAN은 2010년(ASEAN 후발 4개국인 베트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의 경우는 2015년)까지 상품무역을 완전 자유화하는 동시에 서비스교역에

52) 원산지규정의 각 기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하여는 호주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Rules of Origin and Australia's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를 참고.

대한 회원국간 차별적인 조치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만 다자간 서비스교역협정(WTO GATS 제5조 1항b)에 의해 허용한 조치는 제외하기로 하되 GATS에서 ASEAN과 중국이 양허한 서비스교역 자유화 범주를 확대 및 심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중국과 ASEAN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경쟁지향적이며 선진화된 투자제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투자자유화 협상을 실시하고 회원국간 외국인직접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관련법과 관행, 각종 규제조치의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하였다.⁵³⁾

한편 중국이 칠레를 남미의 교두보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칠레가 중국기업들의 남미 투자 및 경영활동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FTA를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과 칠레 해외투자위원회는 2006년 9월 「투자촉진합작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투자정책과 법률, 투자환경, 투자기회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투자유치단 교류, 투자 관련 인터넷사이트 조성 등의 활동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중점투자분야를 선정하였는바 중국은 채광업, 농업, 운송업, 여행업, 과학기술, 에너지, 일반공업, 건축업 등을, 칠레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을 선정하였다. 양국은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 이 양해각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⁵⁴⁾

중·호주 FTA와 중·뉴질랜드 FTA는 기본적으로 상품무역의 관세삭감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53) 정인교 외(2003), p. 89.

54) 칠레 대외협력국(DIRECON), 中国商务部投资促进事务局、智利外国投资委员会 投资促进合作谅解备忘录 참고(<http://www.direcon.cl/documentos/China2/MOU%20Chinese%20version.pdf>).

중국이 기체결한 FTA와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뉴질랜드의 헬렌 클라크(Helen Clark) 총리는 중국과의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협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 것에 대해 헬렌 총리는 칠레는 OECD 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FTA의 내용과 협상범위가 협소하고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뉴질랜드와의 협상은 이와 달리 상품·서비스와 투자를 모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 관계자들도 중·호주 FTA 체결에 5년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선진국과의 FTA 협상은 상품에 불과하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기업 투자환경의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 지식재산권 등의 초국경 이슈(behind the border issue)들이 제기됨에 따라 조기 타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FTA 산업별 입장

가. 농업

중·ASEAN FTA에서 농산품 개방의 조기자유화 조치를 통하여 중국이 ASEAN 국가에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즉 HS 01~08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2006년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중·ASEAN FTA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일종의 혜택 부여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중·호주 FTA와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중국의 농산품시장 개방이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농업협상에

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 이 국가들과 농업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향후 한·중 FTA 협상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중국의 농산품에 대한 수입관세율(MFN) 기준은 15.3%이며 HS 8단위 1,611개의 농산물 수입품 가운데 1,554개 항목에 종가세가, 8개 항목에는 특정 관세, 나머지 49개 항목에는 할당관세(TRQ)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 농산품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관세율은 65%이며 5~20% 범위의 관세항목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동물과 축산물(어류와 수산물을 제외한 CH 01~05), 원피(CH 41~43 가죽과 가죽제품 제외)의 관세율이 각각 13.6%, 11.5%이며, 채소제품(CH06~14)에는 14.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밀, 옥수수, 쌀, 식용채소유(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설탕, 울과 면에 대해서도 TRQ를 적용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호주의 대중 농업수출품목에는 0~51%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무역비중 적용 평균 관세는 3.7%이다.

표 5-9. 호주의 주요 대중 수출품 관세율

(단위: %)

제품	관세율
냉동 우육	25
돈육제품	20
아이스크림	19
설탕	쿼터내 15, 쿼터외 50
몰트	10
전복	10~14
생 혹은 요리된 베리	21.3~30
견과일	25
밀	쿼터내 1, 쿼터외 65
쌀	쿼터내 1, 쿼터외 65
와인	14
원모(raw wool)	쿼터내 1, 쿼터외 38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http://www.dfat.gov.au/geo/china/fta/facts/agriculture_2.html)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9.9%인 반면, 농산품에 대해서는 평균 15.3%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산 주요 농산품에는 최고 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호주는 농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외에도 관세할당량 증가, 검역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수입위험평가과정의 간소화, 표시법 등 기타 무역장벽 완화 그리고 통관절차 및 수입허가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책일관성 등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호주 농업계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시장에 대한 접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7억 4천만 명의 중국 농민에 대해 이 문제를 잘못 다룰 경우 사회불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호주는 호주의 농산품 수출규모가 중국의 농산물시장 규모에 비해 작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농산물 생산능력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개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⁵⁾ 또한 호주는 중국이 주로 축산품, 과일, 채소류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데 반해 호주는 주로 면화, 사탕수수, 포도 등 자원형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어 양국 농업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⁵⁶⁾ 이외에도 호주는 자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경험이 중국에 전수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자유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역시 동물과 유전자 변형제품, 육류와 부산물, 낙농제품, 울, 채소과일 및 화훼류 제품, 종자, 묘목과 기타 식물 등을 중심으로 중국으로의 농산품 수출을 다각화하고 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4대 낙농제품 수출시

55) 면화의 경우 2006년 호주의 총생산량은 중국의 10% 정도인 60만 톤을 기록하였다.

56) 호주의 주요 수출품인 양모의 경우, 호주산 양모는 길고 가늘어 고급의류 생산에 사용되는 반면 중국산 양모는 두껍고 짧아 의류 이외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므로, 중국산 양모 중 호주산 양모와 경쟁할 품종은 10% 미만이라고 호주는 주장하고 있다.

장으로서, 뉴질랜드는 FTA를 체결할 경우 양국의 계절이 반대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키위, 핏프루트, 와인, 채소, 아보카도, 올리브, 딸기류 등의 대중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5-10]에서 보듯이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품 상위 10개 품목이 모두 농수산물이며 전체 대중국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할 경우 자국 농수산업이 받을 충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5-10. 뉴질랜드의 대중 무역 상위 10대 품목

대중국 수출품					대중국 수입품			
순위	품목	2004년	2005년	2006년(P)	품목	2004년	2005년	2006년(P)
1	분유	315,772	231,405	313,422	컴퓨터	216,682	324,885	467,352
2	울	165,161	131,776	183,338	여성의류	102,626	107,756	123,351
3	오팔	77,470	84,210	82,953	전송장비	73,679	83,603	122,314
4	화학목재펠프	86,522	87,176	78,042	의자	52,637	76,430	94,446
5	맥아 추출물	7,630	37,846	77,224	티셔츠	71,618	79,991	89,724
6	통나무	103,617	47,040	73,875	메리야스 직조	74,102	82,019	88,508
7	목재	46,668	54,717	69,638	장난감	78,427	78,614	85,984
8	냉동 생선	39,412	60,163	67,576	신발, 고무 등	71,707	78,868	85,559
9	동물지방	59,898	51,907	59,333	전화장비	45,320	66,207	83,345
10	양고기	47,981	37,830	47,839	TV 수신기	60,244	73,728	81,090
상위 10개 품목 총액		1,230,948	1,139,866	1,344,572	상위 10개 품목 총액	1,276,644	1,544,296	1,914,191
뉴질랜드 총수출액		1,617,246	1,586,856	1,739,889	뉴질랜드 총수입액	3,066,008	3,673,442	4,443,622
상위 10개 품목비중		76	72	77	상위 10개 품목비중	42	42	43

자료: 뉴질랜드 해외무역통계(Statistics New Zealand, Overseas Trade)

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국의 주요 대호주 수출품인 섬유 및 신발 산업은 중·호주 FTA에서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호주의 의류수입, 의류소비, 섬유수입의 각각 74%, 35%,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섬유산업에서 기록하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호주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하여 최저 5%에서 최고 1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5~2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 및 태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 섬유·의류·신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로 삭감(의류는 12.5%)하는 전략적 투자 계획(Strategic Investment Plan)을 통해 섬유산업을 보호하였다. 호주는 중국과의 FTA에서도 관세삭감 일정을 기존의 프로그램, 즉 2015년까지 5%로 삭감하는 프로그램보다 가속화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은 FTA를 통해 호주 의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호주의 섬유시장 개방에 대해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류 산업은 뉴질랜드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는 항목이다. 섬유산업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보호산업이며, 종가세 혹은 대체특수관세(alternative specific tariff)를 부과하고 있다. 종가세의 경우 섬유제품에 0~12.5%, 의류제품에 0~1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체특수관세로 인한 전반적 관세의 상승률은 1.7% 포인트 정도이다.

한편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중·ASEAN FTA는 다자간 서비스교역협정(WTO GATS 제5조 1항b)에 의해 허용한 조치는 제외되 GATS에서 ASEAN과 중국이 양허한 서비스교역 자유화 범주를 확대·심화하기로 하였다. 전 회원국의 관심이 높은 투자와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투명하고 선진화된 투자제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투자 관련법과 관행, 각종 규제조치의 투명

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중국이 체결한 FTA 중 실질적으로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중·홍콩 CEPA이다. 2003년 6월 29일 홍콩의 주권 반환 6주년을 계기로 중국과 홍콩은 자유무역협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 Arrangement)를 체결하였다. CEPA는 2003년 6월 체결되고 2004년 1월 발효된 이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양측은 2004년 8월의 CEPA II 체결과 2005년 11월의 CEPA III 체결을 통해 무관세품목을 확대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조치를 확대하여, 현재는 홍콩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 29일 금융과 법률 등 10개 서비스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포함하는 CEPA IV가 체결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중·홍콩 CEPA를 통해 자유화한 서비스부문은 경영컨설팅, 회의전시, 광고, 법률, 회계, 의료, 부동산, 건축서비스, 운송, 소매, 물류운송, 여행, 시청각, 은행, 증권, 보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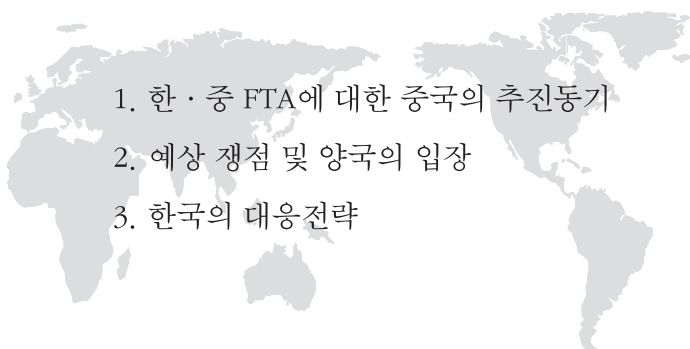
2006년 6월 말 현재 홍콩에는 978개의 서비스 공급자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물류 및 운송, 유통이 각각 451개 및 252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CEPA로 인해 중국기업의 대홍콩 투자가 간소해짐에 따라 2006년 6월 말 현재 378개에 달하는 중국기업이 홍콩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CEPA 체결 이후 중국 개인관광객의 홍콩 방문이 허용됨에 따라 2005년 한 해 동안 2,300만 명의 관광객이 홍콩을 방문하였다.

중·홍콩 CEPA는 금융부문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홍콩은행의 위안화 취급이 허용되었으며, 2007년 1월부터 홍콩에서 위안화 채권 발급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중국의 증권 및 선물회사의 홍콩 지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홍콩의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홍콩 증권거래소의 베이징 사무소가 개설되면 중국 본토 기업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 추진에도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홍콩은 위안화에 대한 자본통제를 완화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6장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3. 한국의 대응전략

1.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한국과 중국은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에 대한 민간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을 양국의 간사연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2006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7년부터 1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분석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 추진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조만간 양국간 FTA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중국정부의 FTA 로드맵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유관 정부기관의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중심⁵⁷⁾과 중국 상무부 정책연구실(2005)⁵⁸⁾의 관련 문헌에 기초하여 중국의 장기적인 FTA 로드맵을 정리하면 [글상자 6-1]과 같다.

57) 國務院發展研究中心課題組(2005), 「“十一·五”規劃期間我國發展的外部環境與對外開放的戰略任務」, 『經濟要參』, 北京, 第26期, pp. 2~9.

58) 于培偉(2005), 「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原則和策略」, 『經濟要參』, 北京, 第37期, pp. 2~8.

글상자 6-1. 중국의 FTA 로드맵

FTA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은 중국의 미래 대외경제관계의 중요한 내용이며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할 것이고 세계의 지역주의를 주도해나갈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多)영역, 다(多)수준, 다(多)지점의 FTA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형성해나갈 것이다. 중국은 국가의 총체적인 발전전략에 비추어 국가·지역별 FTA 추진의 이해득실과 중요도, 우선순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협상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질서 있게 FTA를 추진할 것이다.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2006~10년)의 중점은 두 종류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나는 FTA를 통해 전략적인 자원·에너지의 공급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FTA를 통해 안정된 ‘주변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ASEAN과의 FTA 가속화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주도의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조건을 쌓아나가는 동시에 홍콩·마카오와의 CEPA를 심화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서 대만과 ‘三通(통신·통항·통상)’을 실현하고, 이어서 양안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010년 전후에 FTAA, EU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체를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한다.

둘째, 동북아 FTA를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한다.

셋째, 중국의 거대한 구매력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러시아, 호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중국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경제발전의 탄력성과 국제시장 운신의 폭을 증대시킨다.

넷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대국과의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는 현상을 발판으로 해서 이 국가들과 FTA를 적시에 추진하여, 개도국 블록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구축한다.

다섯째, 구미시장에 심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품과 특정 영역을 선택해 먼저 모종의 특수한 협정(arrangements)을 이루고 개별 영역에서 FTA를 추진하여, 이 시장들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방식과 경험을 점차 축적한다.

마지막으로 EU가 다수의 개도국과 체결한 「로메협정」⁵⁹⁾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빈곤국 및 자원부국의 1차 상품에 대해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제공한다.

이러한 중국의 FTA 로드맵은 국가(지역)별·동기별 FTA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지역)별로는 인접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해외시장 진출, 국내 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들은 부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앞서 제3장과 제4장에서 정리한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 분석결과와 유사하다. 즉 제3장, 제4장의 이론적·실증적 분석에서 추정된 중국의 FTA 추진의 국가·동기별 우선순위는 중국의 유관기관이 제시하고 있는 FTA 로드맵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한국이 갖는 위치이다.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기대하는 동기는 에너지·자원 확보, 시장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국, 일본과의 주도권 경쟁 측면에서 한·중 FTA의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며, 경제적 필요성은 부차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중간의 경제교류와 협력관계는 FTA라는 틀 없이도 이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 있다. [그림 6-1]과 [그림 6-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미국 26.9%, 일본 23.1%, 중국 2.1%에서 2005년에는 중국 18.4%, 일본 13.2%, 미국 13.1%로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1.6%에서 2005년에는 40.4%로 급증하였으며, 중국의 FDI 유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2년 1.1%에서 2005년 8.6%로 높아졌다.

59) 로메협정은 1975년에 EU와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개도국 46개국간에 체결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特惠관세협정으로, EU는 이 협정에 참가한 개도국에 일방적으로特惠관세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6-1. 한국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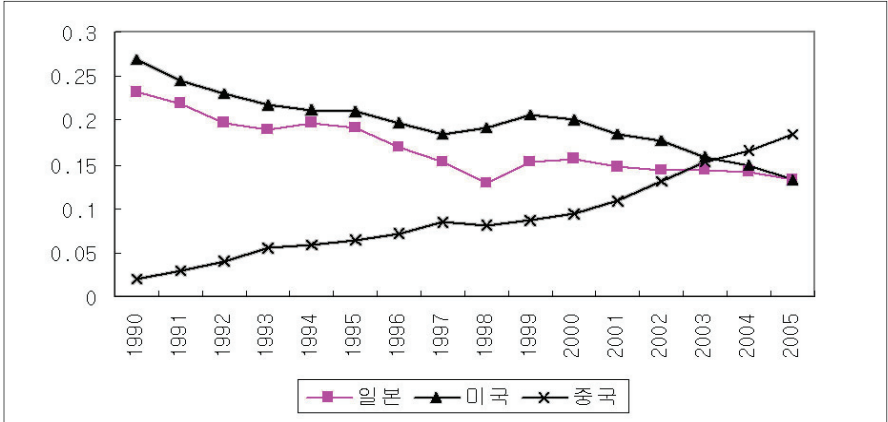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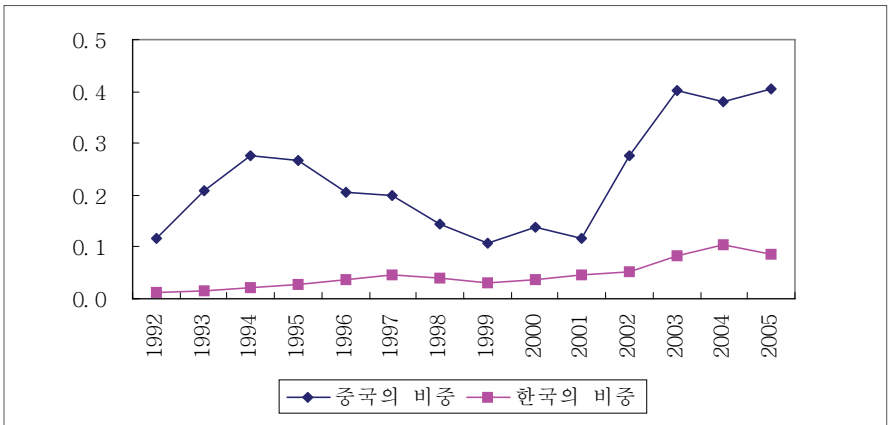


그림 6-2. 한국(중국) FDI 유출(유입)에서의 중국(한국)의 비중



이처럼 한·중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FTA 없이도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과 엄청난 잠재적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경제와 중국경제는 통합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상호의존도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

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데에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에서 일부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동북 3성(省)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소화하기에 용이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종래 중국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나 이를 통한 기술확산효과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 외국인투자정책을 첨단 설비·기술을 선별적으로 유치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자주적인 혁신능력 개발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 예상 쟁점 및 양국의 입장

가. 협상분야별 예상 쟁점

중국은 기체결 FTA인 중·ASEAN, 중·칠레, 중·파키스탄 FTA 협정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15년 정도의 관세삭감 유예기간을 정했으며, 자국 산업에 미치는 민감도를 고려하여 관세삭감 일반 규율에서 예외를 적용하는 민감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체결 FTA 상대국은 대부분 중국에 비해 제조업이 낙후된 국가이므로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이 중국과의 FTA 관세철폐 협상시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FTA로 인해 혜택 또는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충분히 수행하여 한·중 FTA 관세철폐 및 민감품목 설정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이 중국과의 원산지규정 부문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호주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의 구체내용을 통해 양국의 입장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에 있어 원산지규정에서는 양측의 의견충돌이 미미하였으나, 중·호주 FTA 협상의 경우에는 양측이 원산지규정 방식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고수함으로써 협상 진전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은 주로 HS 2단위 및 HS 4단위 세번변경 요건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세번변경 요건에 비해 특정 공정(SP) 요건과 역내 부가가치(RVC) 요건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⁶¹⁾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한·중 FTA 원산지규정 논의에서도 중국과 이 사안에 대한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정인교 외(2005)에서는 원산지규정 그 자체를 세관과 무역업자에게 부담스럽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가급적 단순하고 이해가 용이하며 투명하게 만들 것과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확인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객관적인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하되 품목분류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투자보장의 경우 한국은 FTA 체결 이전에 우선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체결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을 정도로 중국과의 투자보장협상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BIT는 완전한 교역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FTA의 중요한 부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한·중 투자보장협정은 단순히 투자 송금 보

60) 원산지규정의 경우 중국은 부가가치 기준, 호주는 세번변경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61) 정인교 외(2005), p. 117.

장 등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의 투자기업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2003년 양국 정상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수립에 합의한 이후 그동안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문제를 지속적으로 최우선과제로 논의해왔다. 한국은 2002년 일본과 BIT를 체결하였으나 미국과의 BIT 협상은 스크린쿼터 폐지 문제로 인해 결렬된 바 있다. 중국도 그동안 한국과 처음으로 BIT 수준의 투자협정을 맺게 될 경우 미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약속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⁶²⁾

최근 한·중·일 3국은 각각 맺은 투자보장협정을 3국 공동의 다자간 협정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한·중·일 3국은 2006년 10월 3국 정상간의 연례회담에서 합의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기존 쌍무협정을 대신하는 다자간 공동협정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당시 일본에서 제안한 3국간 투자보장협정은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재산권 등에 대해 3국 공통의 보장장치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⁶³⁾ 한·중 FTA에서의 투자부문 협상도 이러한 움직임의 현실화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산업별 예상 쟁점

FTA 협상에서 농업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한·중 FTA에서도 농업문제는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5장의 주요 쟁점 중 농업부문에서 살펴본 중·호주 FTA 협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는 농업 협상과정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부문에서 구체적인 품목의 수량적 근거를 확보한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62) 『중앙일보』(2005), 「한·중 투자보장협정 격상 추진」. (9월 27일자)

63) 『한국경제』(2006),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다자협정으로 격상 추진」. (11월 7일자)

임하고 있다. 호주는 중국의 자국 농업 민감품목 보호논리를 논박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을 부각하는 협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도 향후 한·중 FTA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부문이다.

한편 중국이 한국에 대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부문은 주로 자원 및 노동집약형 상품으로, 동식물·식용원료·광산품·동식물 상품을 원료로 하는 방직 원료 및 가방·의류·금속제품·기계전자제품·기타 제품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은 주로 중화학공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요 산업은 자동차·약품·유기화학품 등이다. 중국과 한국의 경쟁분야는 주로 고무 및 관련 제품·종이 및 판지·인쇄품·보일러·기계 상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량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는 산업에서는 각기 다른 품질의 상품 중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관계가 존재한다.⁶⁴⁾

중국의 경우 앞서 지적한 대로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와 체결한 FTA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 대비하여 제조업부문 협상을 위한 자체적인 면밀한 사전조사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품목들의 대중국 수출 강화방안과 경쟁품목들의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중국 우위 품목들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호장치 등 발생 가능한 상황과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중국은 중·ASEAN FTA와 중·칠레 FTA에서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호주나 뉴질랜드와의 협상에서도 서비스분야를 포함시키는 데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64) 张建平(2005), p. 11.

서비스업 시장이 미성숙하여 개방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CEPA에서의 폭넓은 서비스 개방 역시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양안사지(兩岸四地: 대륙, 대만, 홍콩, 마카오)’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통치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은 중국에 대해 투자·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의 대응전략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무역장벽 전반의 철폐 및 무역활성화 효과로 인해 양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⁶⁵⁾ 우선 한·중 FTA를 체결할 경우 값싼 중국산 완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철폐, 무역구제조치 완화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구 13억 명의 거대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됨으로써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품 및 중간재 등 한국의 전통적인 대중국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최종재의 대중국 수출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1.3%가 수출 증대와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유로 한·중 FTA 체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⁶⁾

65)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의 연구결과(자본축적 CGE 모형)에 따르면 한·중 FTA는 동태적으로 한국의 GDP를 약 3.13~3.17% 증가시키며, 국민후생을 약 2.98~3.0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는 GDP와 국민후생이 각각 0.58~0.59%, 0.59~0.60% 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FTA 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FTA가 후생효과 증진 및 무역확대와 같은 기회요인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⁶⁷⁾

다음에서는 역내주도권 확보와 기술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한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했듯이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에서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안보적 동기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접근을 고려할 때 한·중 FTA가 역내 지역주의 질서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한·중 FTA에 대해 중국이 한국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한·일 FTA 협상과 한·미 FTA 협상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일 FTA나 한·미 FTA가 성사될 경우 중국 중심의 지역주의에 미칠 부정적 영향, 즉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지역주의 질서가 미국 또는 일본 중심으로 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미 FTA와 한·일 FTA를 견제하고 나아가 역내 FTA 주도권 확보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66) 전경련에서 실시한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87.4%가 한·중 FTA 체결시 대중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70.3%는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67.7%의 기업과 55.4%의 기업이 중국과의 FTA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내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7) 위의 전경련 조사에서 한·중 FTA를 반대하는 기업의 53%가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였고 35.3%가 농수산물 및 국내 취약산업의 기반 약화를 제시하였다.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 지역주의 질서를 둘러싼 미·일·중의 주도권 경쟁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역내 정치·경제 질서를 고려할 때 한국이 미·일·중과 비경제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경제적 의미의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미 및 한·EU FTA는 동북아 내지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국제적 지위 향상)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한·미 및 한·EU FTA가 성사되면 한국은 아태·유럽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한국과의 FTA를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FTA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역내에는 한·일 FTA, 한·중 FTA의 성사가 촉진되는 FTA 도미노효과(domino effect)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한·중·일의 동북아 FTA는 물론 ASEAN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FTA 형성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이 우선순위(sequence)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는 한국의 금후 경제발전전략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이루려면 우선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 속의 양대 흐름인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지역주의 추세에 잘 적응해야 할 것이다. 이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한국에 유리한 것은 한·미 및 한·EU FTA이다. 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주도하는 미국 및 EU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comprehensive and substantial)’ FTA를 맺는다면, 이는 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이 빠르게 심화되는 추세 속에서 선진국과의 FTA는 한국에

지역주의를 다변화하는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향한 개방형 지역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한국경제가 제약요인(자원부존조건, 지경학적 환경, 높은 대외의존도 등)을 극복하면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 응당 취해야 할 선택이다. 동아시아 경제 또한 본래부터 다른 경제블록에 비해 개방형 국제분업구조로 발전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한·미 및 한·EU FTA가 이루어지면 이는 한국을 둘러싼 지역주의를 다변화함으로써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개방형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데 중대한 추진력(momentum)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해야 하는데 이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도 한·미 및 한·EU FTA가 한·일, 한·중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선진국들과의 FTA가 이루어지면 과학·기술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 확충,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보다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소위 ‘경제적 너트크래커(economic nutcracker)’ 상태에 빠지는 위협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한편 세계화 시대에서 세계의 경제자원은 투입산출효율이 보다 높은 곳으로 재배치되고 있어서 각국은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한·미 및 한·EU FTA가 이루어지면 한국의 경제제도와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에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외교·안보적 측면의 동기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고, 한국이 이에 대응하려면 △ 강대국간 역내 헤게모니 경쟁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 △ 안보 역량의 유지 및 강화 △ 역내 비즈니스 허브 및 역내 FTA 허브로의 발전 △ 아·태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의 위상 확립 △ 역내 경제통합 심화 추세에 대비한 다변화 전략 등을 통해 전 세계를 향하는 개방형의 지역주의를 발전시킬 필요

가 있다. 동시에 한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 경제제도의 선진화와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한·미 및 한·EU FTA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고, 이를 성공적으로 타결한다면 한·중 FTA도 보다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세계화 시대 속에서 전 세계를 향하는 개방형 지역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한·중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세계의 공장과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기회와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중 경제협력을 발전시키려면 한·중 FTA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며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글로벌 표준 상용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한국은 FTA라는 틀 없이도 지금까지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온 국가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0년 이래 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 및 산업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 등의 요인으로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의 장기적인 대중국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상대적인 기술비교우위 및 분업구도를 유지·고착화하여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중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 및 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 대중국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현지 투자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 FTA 틀 안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중 FTA 추진시 중국의 수입관세는 물론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 FTA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은 중국이 더욱 강해 보이므로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⁶⁸⁾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EU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일본·EU 등과의 FTA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한·중 FTA 추진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요소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68) 전경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중 FTA의 체결시기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의 36%가 4~5년 이내, 34.1%가 2~3년 이내, 23.2%가 5년 이후, 6.7%가 1년 이내를 선호함으로써 59.2%의 제조업체가 중·장기에 걸쳐 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은국. 2004. 「최근 중국의 FTA 추진현황」. KIEP 주간초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영숙 외. 2004.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두복. 2003.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 외교안보연구원.
- 박병인. 2005.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중국의 경제적 이해」. 『중국학연구』, 제31집, pp. 323~351.
- 박복영. 2004. 「中國, 석유 확보 위해 中東 진출 본격화: 중국-GCC 간 FTA 추진 합의」.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국찬. 2003. 「중국의 對ASEAN 접근강화 동향 및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 ‘부강한 중국’과 한반도」. 아연 중국연구총서 1.
- 안충영·이창재 편. 2003.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서울: 박영사.
- 여지나. 2005. 「중-칠레 FTA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초점.
- . 2006. 「중국의 FTA 추진목표와 주요이슈」. 『월간 KIEP 세계경제』, 1월호.
- 오용석. 2003. 「중국의 동북아정책」.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걸음』, pp. 355~363.
- 오진용. 2003. 「3자회담과 중국의 對북한 정책」. 『월간 北韓』, 6월호. 서울.
- 이 근. 2003. 「안보의 시각에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능성」. 『동북아 경제협력: 통합의 첫 걸음』, pp. 375~392.
- 이상만. 2001. 「동북아의 신냉전과 중국의 반패권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2호.
- 전경련. 2006. 「韓中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 정인교. 2002.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 정인교·노재봉. 2005.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서울: 해남.
- 정인교·오동윤. 2004. 「중·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 『월간 KIEP 세계경제』, 2월호.
- 정인교 외. 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시리즈 03-02.
- _____. 2005.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분석 및 실증연구」.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조현준. 2004. 「동아시아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월간 KIEP 세계경제』, 5월호.
- 지만수 외. 2005.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 2005. 「중국과 선진국과의 FTA 전망」. 중국경제현안브리핑. (4. 28)

[중문자료]

江小涓·楊聖明·憑雷. 2003. 「中國對外經貿理論前沿Ⅲ」, pp. 22~55.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郭继丰. 2005. 「中国FTA战略: 合作共赢全球均衡」. 「第一经济日报」. pp. 9. 13

國務院發展研究中心課題組. 2005. 「“十一五”規劃期間我國發展的外部環境與對外開放的戰略任務」. 「經濟要參」. 第26期, pp. 2~9. 北京.

武心波. 2002. 「全球化與中美關係戰略基礎的重構」. 「外貿經濟·國際貿易」, 第12期. 北京. (중국 국무원 發展研究中心이 유료로 운영하는 정보자료 웹사이트(www.drcnet.com.cn)를 이용해 검색)

白當偉·陳瀉高. 2003. 「區域貿易協定的非傳統收益」. 「外貿經濟·國際貿易」, 第8期, pp. 47~51. 北京: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賓建成·陳柳欽. 2005. 「世界双边FTA的发展趋势与我国的对策探讨」. 「经济学研究」, No. 11, pp. 9~19.

憑雷. 2005. 「均衡戰略利益 - 北美自由貿易協定的實施及經驗」. 「國際貿易」, 第10期, pp. 23~27. 北京.

憑飛. 2005. 「我國實施資源全球化戰略的機遇與挑戰」. 「經濟要參」, 第1期, pp. 28~30. 北京.

憑赫. 2005. 「推進“引進來”與“走出去”相結合, 實現對外開放全面協調發展」. 「經濟要參」, 第58期, pp. 19~26. 北京.

徐雪. 2005. 「全球保護主義陰影下我國紡織業應對貿易壁壘的策略」. 「經濟要參」, 第78期, pp. 11~19. 北京.

蘇萌. 2005. 「CEPA Ⅲ协议签署 零关税开闸服务市场」. 「WTO 经济导刊」, 第11期 总第31期, pp. 18~19.

孫莉. 2005. 「中國-東盟自由貿易區原產地標準及其完善研究」. 「河海大學學報」, 第7卷, 第2期, pp. 9~12.

宋群. 2004. 「東亞經濟合作的新發展及我國的對策研究」. 「經濟研究參考」, 第4期, pp. 2~13. 北京.

新華社. 2006. 「胡锦涛就建设和谐地区提出四点建议」. 6월 15일자 기사.

楊思遠. 2004. 「“國際經濟”與“世界經濟”不一樣」. 「世界知識」, 第1380期, p. 18. 北京.

- 溫耀慶. 2005. 「區域經濟浪潮的興起及其經濟動因分析」. 『國際貿易』, 第9期, pp. 26~30. 北京.
- 姚戰琪. 2005. 「開拓市場與對外投資並重 - 貿易摩擦和爭端高發期的中國家電出口增長空間」. 『國際貿易』, 第5期, pp. 11~15.
- 于培偉. 2005. 「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原則和策略」. 『經濟要參』, 第37期, pp. 2~8.
- 俞可平. 2001. 『全球化時代的馬克思主義』, pp. i - vi. 台北新店: 創世文化事業出版社.
- 劉光溪・陳泰鋒. 2005. 「WTO效應: 開放促改革、促發展」. 『經濟研究參考』, 北京, 第8期. pp. 2~24.
- 林今淑. 2005. 「中國企業對朝鮮投資的探討」. 『國際貿易』, 第10期, pp. 18~22.
- 劉昌黎. 2001. 「日韓自由貿易區對我國的影向及對策」. 『世界經濟』, 第11期. 北京.
- 李英明. 2001. 『全球化時代下臺灣和兩岸關係』, pp. 31~33, 159~160. 台北: 生智出版社.
- 李霞. 2005. 「世界FTA發展趨勢與我國的區域經濟合作戰略」. 『南方經濟』, No. 8, pp. 62~64.
- 張鴻. 2005. 「關於中國對外貿易戰略調整的思考」. 『國際貿易』, 第9期, pp. 4~9. 北京.
- 趙晉平. 2003. 「從推進FTA起步 - 我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新途徑」. 『國際貿易』, 第6期, pp. 4~9.
- 陈冰. 2006. 「中国新全球战略初见端倪」. 『聯合早報』, (싱가포르 6월 22일자 기사)
- 陳迎春. 2004. 「中國參與區域經濟合作的現狀,問題與建議」. 『經濟研究參考』, 第1772期. 北京.
- 陈柳钦. 2005. 「世界双边自贸区的发展趋势中国的对策探讨」. 『国际问题研究』, 2005年 第6期.
- 蔡宏明. 2003. 「中國大陸合縱連橫台商定位何處」. 『貿易雜誌』, 台北, 第138期, pp. 10~17.
-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 2002. 『アジア研究報告書: 中國がアジアを変える--日本の生き残り戦略』.
東京.

[영문자료]

- Baier, S. L. and Bergstrand, J. H. 2004. "Economic Determinants Of Free Trade Agreem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4, pp. 26~93.
- _____. 2006. "Do Free Trade Agreements Actually Increase Member'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forthcoming.
- Bond, E. et al. 2004. "Free Trade Area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pp. 1~28. (October)
- Drucker, P. F. and Nakauchi, I. 1997. *Drucker on Asia*.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 Greene, W. H. 2000. *Econometric Analysis*. 4th Edition.
- Hale, D. and Hale L. H. 2003. "China Takes Off." *Foreign Affairs*, Vol. 82, No. 6, pp. 36~53. (November/December)
- Krugman, P. 1991. "The Move Toward Free Trade Zone." *Policy Implications Of Trade*

- And Currency Zones*, pp. 7~41. Proceedings of A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Symposium.
- Krumm, K. and Kharas, H. eds. 2003. *East Asia Integrates: A Trade Policy Agenda for Shared Growth(Advanced Edition)*, pp. 79~100.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Lee, H. S. et al. 2005. *An Economic Effects of Korea-China FT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EP.
- LeSage, J. P. 1999. *Applied Econometrics using MATLAB*.
- Medeiros, E. S. and Fravel M. T. 2003. "China's New Diplomacy." *Foreign Affairs*, Vol. 82, No. 6, pp. 22~35. (November/December)
- Roland-Holst, D and Azis, I. and Liu, L. G 2003. "Regionalism and Globalism: East and Southeast Asian Trade Relations In the Wake of China's WTO Accession." Discussion Paper Series. ADB Institute. Tokyo.
- UNCTAD. 2003.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 Zhang Jianping. 2006. *Analysis on Issues and Prospects of China-Korea FTA*. CNAEC Research Series 06-04.

[웹사이트]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OFAT). Joint Study Report o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and New Zealand. <http://www.mfat.govt.nz/Trade-and-Economic-Relations/0--Trade-archive/0--Trade-agreements/China/0-jointstudyreportindex.php>
- 외교통상부, 한칠레 FTA. http://www.mofat.go.kr/mofat/mk_a013/mk_b069/mk_c219/mk13_03_sub06.jsp
- 칠레 대외협력국(DIRECON).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智利共和国政府自由贸易协定(중문), <http://www.direcon.cl/documentos/Estudio%20Factibilidad%20Acuerdo%20Chile-China.pdf>
- _____. 中国商务部投资促进事务局、智利外国投资委员会 投资促进合作谅解备忘录(중문), <http://www.direcon.cl/documentos/China2/MOU%20Chinese%20version.pdf>
- _____. JOINT FEASIBILITY STUDY ON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LE AND CHINA(영문), <http://www.direcon.cl/documentos/Estudio%20Factibilidad%20Acuerdo%20Chile-China.pdf>
- 호주 외교통상부(DFAT). Rules of Origin and Australia's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http://www.dfat.gov.au/trade/050921_roos_background.html

_____. Australia-China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http://www.dfat.gov.au/geo/china/fta/>

张建平. 2005. 「中韩自贸区的设立对中国主要制造业的影响分析」. CSF 전문가칼럼 2006.5.2
일 게재. [http://csf.kiep.go.kr/bri/column/column_list.aspx?cur_page=2&SKey=&SType=](http://csf.kiep.go.kr/bri/column/column_list.aspx?cur_page=2&SKey=&SType=SCO)
SCO(상해협력기구)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http://www.sectsc.org>)



Executive Summary

China's FTA Strateg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hang-Kyu Lee, In-koo Lee, Jina-Yeo, and Hyun-Jun Cho

This report mainly deals with the objectives and motives of China's FTA (Free Trade Agreement) and analyzes China's FTA strategi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order to draw up more viable suggestions for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Chapter 2 briefly describes several important FTA negotiations in process at the moment. China-ASEAN FTA negotiations began in July 2005 to promote the full liberalization of trade in goods and is expected to finish by 2010. China has completed two bilateral FTAs with Chile and Pakistan. With Hong Kong and Macao, China also concluded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to include the liberalization of trade both in goods and services. FTA negotiations with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and New Zealand are now in process, and energy security issues have been on the negotiation table since 2004 with the GCC.

In Chapter 3, we explain the purposes of China's FTA promotion and analyze the decisive factors for China to select its FTA partner countries.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1) diplomacy and security and (2) economic interest. From the first point of view, China has located herself in the center of the Eurasian FTA in the long term blueprint to parallel EU, FTAA. It appears that

China wants to strengthen its leadership and to offset the US influence in the region to form Sino-centric East-Asianism.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 main concerns include: securing energy and raw material sources overseas; evading trade dispute (by diversifying export markets to enter new emerging markets, roundabout trade to the western markets etc.); inducing recognition of China's MES (Market Economy Status); enhanc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facing pressure from the US on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 promoting 'Great West Development' and 'Northeast Revival'; strengthening ties with overseas Chinese; and accelerating the Chinese companies, 'going abroad' process, etc.

To sum up, China seems to prioritize FTA partner countries among the countries in the vicinity, developing countries or third world countries, and non Western countries. More specifically, China tends to prioritize countries that can be used as roundabout routes for its export to the western markets, countries that will help China to secure sources for energy and raw materials, and also those that can give an edge to the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promotion of west and northeast development.

This finding is also supported by the empirical study presented in Chapter 4. By employing the Probit Gravity model, we show that China mainly promotes FTAs with (1) adjacent and nearby countries and (2) countries with abundant natural resources.

In Chapter 5, we selected from China's FTA draft texts and joint feasibility study texts several of its FTA norms and key issues that are on the negotiation table. This work allowed us to look more closely into China's behaviors in different FTA negotiations dealing with several imperative norms and issues. The selected FTA norms of this paper fall into three categories: tariff removal;

rules of origin (ROO); and investment treaty. Agriculture, other manufacturing sectors and service sector are chosen as the key issues in China's FTA negotiations, and these are also expected to be hot issues in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 to come.

Chapter 6 is focused on conclusions drawn up from China's FTA strategies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A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have a dramatic economic impact on both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removal of trade barriers and trade promoting effects. Korea will witness a surge in its import of China's final goods and an increase in its domestic consumers' welfare. Moreover, Korean exporters' access to China's huge market of 1.3 billion population will be made easier by the simplified clearance process, tariff removal, eased trade remedies etc.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maximize the expected benefit from the FTA, Korea must make full efforts to conclude a comprehensive Korea-China FTA, such that it includ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estment related issues, and service sector liberalization, etc. in the FTA negotiations. There is no doubt that more and more Korean firms are investing in China as China's importance as a sales market grows. Moreover,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an FTA is likely to increase FDI flows between the two economies, as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reduction of trade costs and improvement in investment environment makes markets within the FTA area more attractiv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two countries need to improve a framework of regul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李章揆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경제학 박사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現, E-mail: cklee57@kiep.go.kr)

著書 및 論文

『중국경제연보』 (공저, 2003)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과 우리의 대응방안』 (공저, 2003) 외

李麟求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ik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Real Exchange Rate Volatility in the Presence of Commodity Arbitrage”(2006)

“The Trade Cost Model: Implications for the LOP and PPP”(공저, 2005) 외

呂智娜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現, E-mail: soy@kiep.go.kr)

著書 및 論文

『중국 방송시장 현황과 진출전략 - TV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2006)

「중국 FTA 추진목표와 이슈」 (2006) 외

趙顯垓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대만국립정치대학교 법학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現, E-mail:hjzion@konkuk.ac.kr)

著書 및 論文

「중국 FDI 정책의 목표: 전개, 성과 및 과제」 (2005)

「제조업체의 중국내 투자경영성과 실증분석」 (공저, 2006) 외

연구보고서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006년 12월 26일 인쇄

2006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형제인쇄(주) 전화 02)2278-8828 대표 박석삼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1257-9 94320

정가 7,000원

89-322-1072-1(세트)

China's FTA Strateg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hang Kyu Lee, Inkoo Lee, Jina Yeo, and Hyun-Jun Cho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심화를 거듭함에 따라 중국의 지역주의 움직임이 한국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결과 중국의 FTA 추진전략은 국가별로는 인접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서는 에너지자원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해외시장 진출, 국내지역 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는 부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2579
ISBN 978-89-322-1257-9
978-89-322-1072-8 (세트)

정가 7,000원